

제428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8월27일(수)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4회 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해양수산부 소관
 - 농촌진흥청 소관
 - 산림청 소관
 - 해양경찰청 소관
- 2024회 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상정된 안건

- 2024회 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해양수산부 소관
 - 농촌진흥청 소관
 - 산림청 소관
 - 해양경찰청 소관
- 2024회 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2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0시08분 개의)

○소위원장 윤준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2024회 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내일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해당 항목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에서는 의견이 있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다섯 가지 유형으로 시정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 처리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로 다루기 곤란한 내용으로서 정부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거나 개선 방향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부대의견을 첨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마. 해양경찰청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0시10분)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도중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실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려면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1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시정요구 유형 및 분류기준 및 감사원 감사요구 기준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상임위 예비심사 시정요구 현황도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보조사업 실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윤준병 위원님과 정희용 위원님께서 농식품부 소관 보조사업의 저조한 실집행률을 지적하시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집행 부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평가하고 보조금 관련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를 지양하는 등 보조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2페이지 2번, 세입재원 없는 이월 최소화 노력 등 필요입니다.

임미애 위원님께서 세입재원이 없는 이월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집행가능성이 낮은 보조금 교부의 지양, 타 회계 등으로의 전출

규모 적정화 등을 통해 세입재원이 없는 이월을 최소화하고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외상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관행을 시정하며 보조금 교부 상황을 고려하여 대단위사업의 공사를 시행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농특회계 의무전출 규정의 실행가능성 제고 필요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께서 농특회계 의무전출 규정의 실행가능성 문제를 지적 하시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특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에 대한 의무전출 규정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대규모 토지취득 수반 지자체 지원사업 예산의 지분취득비 편성 노력 필요는 이만희 위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대규모 토지취득이 수반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의 예산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아닌 지분취득비로 편성하여 재정 효율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사업자 선정부터 주민 동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사업예고제 같은 것을 해서 미리 예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 준비를 한 데 대해서는 좀 적정하게 예산을 주는 그런 게 아마 자치분권에도 맞을 겁니다. 그런 방안으로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걸 고민해 보겠습니다.

2번에 대해서는 세입재원 없는 이월은 이월이 안 되면 사업이 중단됩니다. 다만 이월 된 데 대해서는 차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편성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농특회계 의무전출은 실제 농특회계에 전입되는 금액이 6조입니다. 그중에서 여기 있는 수입농수산물은 한 이삼백억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할 건지 아니면 통제를 통해서 할 건지는 좀 판단이 필요하고요. 저희들은 하여튼 제도개선을 수용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4번은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안)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대규모 토지취득이 수반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의 예산을’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경비가 토지취득비가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토지취득 수반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경비를’ 이 정도로 해야 토지에 대한 분만 토지취득비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고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어 개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1번, 보조사업 실집행률 제고방안 제도개선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예산집행지침에 위배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지침 위배되면 위법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법은 아니고요. 지침 위반은 위법은 아니니까요. 좀 부당……

○**소위원장 윤준병**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다 국가재정법이나 여기에서 위임해서 만든 법과 일체화된 지침이어서 위법이에요, 사실. 하여튼 그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니까 그 내용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2번은 수용하셨고.

3번 내용은 제도개선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것도 위법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있는데, 잘 알겠어요.

그다음에 4번, 토지취득 수반을 목적으로 하는 경비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토지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예산 중에서 그 경비에 대해서만 지분취득비로 계상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

○**소위원장 윤준병** 토지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의 경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경비.

○**소위원장 윤준병** ‘경비를’ 이렇게 쓰자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 진행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 소관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번, 국제기구분담금 미납 개선 필요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분담금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연도 내 부족액이 발생 시 관련 규정의 허용 범위 내에서 국제분담금 납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주의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6번, FAO 한국협회 지원사업 예산편성 방식 개선 필요는 임미애 위원님과 문대림 위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FAO 한국협회에 대한 지원 예산편성 시 국제기구분담금의 내역사업이 아닌 별도의 보조금 관련 사업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7번, 식량원조사업 성과평가 필요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식량원조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경우 사전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주의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8번, 연구용역의 연례적·반복적 이월 지양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책연구용역 수요의 사전 발굴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주의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9번,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진출국 다변화 필요는 문대림 위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

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의 지정학적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진출 지역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환율이 크게 변동하거나, FAO 같은 경우에는 3년 단위로 납부를 하는데 매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납부액이. 그런데 예산은 전년에 비해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고요. 저희들이 분담금을 내지 않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6번에 대해서는 FAO 한국협회는 사실 국제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보조금 관련 사업으로 편성하도록 기재부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7번 식량원조사업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서 평가를 제외시켜 놓고 있습니다, 다른 건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제외시켜 놓은 걸 또 하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배를 하고 나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도는 뭔지 압니다. 평가를 해서 좀 제대로 지원이 되게 하라는 건데 그런 취지에 맞게는 하겠습니다. 다만 의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8번에 대해서는 용역의 이월은 최소화돼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다 최소화되도록 사업 시행을 빨리 하겠습니다.

다만 국제국은 FTA 협상이 타결되면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 FTA 타결이 돼야 되는데 그 시점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런 게 아닌 것에 대해서는 좀 일찍 집행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 특정 국가에 집중된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사실 너무 집중이 돼 있어서 CIS나 오세아니아, 미주 이쪽을 하도록 기업들한테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번 국제기구분담금 미납 개선 필요 이것은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로마에 가서 FAO 관련된 내용을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단위로 환율이 갑자기 올라서가 아니고 제대로 예산집행을 않더라고요. 그것은 국제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위신에 손상을 초래하는 현상이다, 이것은 좀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점을 환기시켜 드리니까 제대로 하시기 바라고.

제도개선 수용한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윤준병** 그다음에 7번, 문구 수정을 어떻게 해 달라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평가를 실시해서 성과가……

○**소위원장 윤준병** ‘의무적으로’라는 걸 빼 달라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인 평가에서 지금 빠져 있는데 그걸 다시 넣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식량 원조하다 보니까 이게 성과를 그렇게 치밀하게 관리해야 되는 그런 타당성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자성 양자사업도 국제기구가 하기 때문에.....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의무적으로’라는 표현을 ‘실효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윤준병** 8번,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알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정책국 소관 4건입니다.

10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확충 및 지역별 형평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확충을 위한 민간기업 기부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기금 지출의 지역별 편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주의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11번, 기사형 광고의 개선 및 정책중심 홍보 강화 필요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기사형 광고의 투명성 및 식별성을 제고하고 기관명 중심의 광고보다는 농정 관련 정책성과를 중심으로 홍보를 실시하며 예산집행 관련 지침을 준수할 것이라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8페이지 12번,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성과 제고 필요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의 예산 실집행률과 검진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동검진의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검대상자 연령의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를 제안하셨습니다.

다음 13번,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개선은 이만희 위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2025년 집행실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에 실제 집행 가능한 적정 소요를 반영할 것이라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0번입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사실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런데 대중소기업이 잘 견히는 이유가 대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하청하는 업체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합니다, 공정을 개선한다든지. 그런데 사실 우리 부는 그게 없고요, 농업은. 그런 게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사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법을 제안하셨는데 위원장께서 이번에 제안하신 기부금품법 모집 제한, 사실 공무원들은 기부금품 모집을 홍보할 수 없습니다. 이게 풀린다면 좀 잘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조항들은 다른 부처랑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건 좀 꼭 푸는 게 저희들은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풀게 된다면 좀 잘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11번 같은 경우에는 맞는 지적을 말씀하셔서 반드시 저희들이 이 제도개선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위원님들께서 건강검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나이를 좀 상향하거나 이동검진 그리고 한 군에 병원을 여러 개 해서 좀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13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수용하고요. 저희들이 사실 공간정비사업은 매년 한 20~30%였는데 제도개선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집행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12번 같은 경우에 검진율이 낮은 이유가 연령 문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자체와의 협력관계라든가 의료기관 확대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 홍보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실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게 해서 검진율을 높이는 방안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수용하시겠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윤준병** 이것 정부의 개선안을 빨리 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다음에 12번은 제도개선으로 수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방금 문대림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은 자체 협업 내용이 잘 돼서, 사실은 수혜를 주면서 수검을 않는 내용은 좀 의아하게 보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저는 조금만 노력하면 수검률 확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윤준병** 그다음에 13번, 문구 수정은 어떻게 해 달라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닙니다. 그냥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냥 수용이요? 오케이.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관 소관은 9건입니다.

14번,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의 실효성 제고 필요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의 정책과 예산의 연계성 부족을 지적하시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후계

농자금 이차보전 예산 등 청년농 지원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고 유휴 국공유지 확보 및 임차 수요가 높은 부지의 매입단가 조정 등을 통해 청년농에게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 전용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10페이지 15번, 사업계획의 면밀한 수립 및 성과 제고방안 마련 필요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의 실집행률 저조를 지적하시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세대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중장기적 농지 확보 목표를 설정하는 등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고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 16번, 농지보전부담금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 강구 필요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지보전부담금 미수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등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17번, 효과적인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방안 마련 필요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매입에 있어 전략매입지구 지정 및 집중매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농지매입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를 제안하셨습니다.

다음 18번, 국회의 심의 의결 취지와 다른 사업변경 재발 방지 등 필요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신규 사업 추진이나 예산을 확대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19번, FTA 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는 어기구 위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FTA 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제도개선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 20번, 피해보전직불제도 시행 종료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는 역시 어기구 위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보전직불제도 시행의 종료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1번,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의 실투자 촉진 필요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창업, 스마트농업 확대 등 본래의 정책목표를 적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자펀드의 실투자를 촉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22번, 공익기능증진직불제도의 다각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는 이만희 위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기능증진직불제도가 공익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말씀드리겠습니다.

14번입니다.

청년농에 대해서는 농지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임대라든지 선임대 후매입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을 늘려 가고 있습니다. 다만 밑에 있는 자금 상환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 이후의 경영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영 이후에는 저희들이 돌볼 수 있는 조치가 많이 없는데 그런 데까지 좀 넓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번입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은 사실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3000㏊였는데 저희들이 이것 예산을 1300㏊로 대폭 축소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단가를 좀 인상해서 실제로 이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16번도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지보전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결정이 되는 시기는 농지 협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납부 시기는 법적으로 1년, 2년 있는 게 아니라 전용 허가가 될 때, 그러니까 사업 허가가 날 때 냅니다. 그래서 결산서를 보면 42%밖에 안 냈지만 실제로 그거는 미납금액이 아니라 법정기한이 도래가 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실제로 법정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것들은 1년에 한 300억 규모입니다, 물론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 법정기한을 고려한다면 훨씬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적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리고 사실 이게 제대로 되려면 납부기한을 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납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에 대해서는 이것도 사실 매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단가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높이고, 그리고 또 전략매입지구가 과연 이것을 해 놓으면 실제로 잘 매입이 될 건지, 오히려 농업인들이 안 팔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8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릴 말씀 없습니다. 맞는 지적을 하셨고요. 저희들이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고 예산집행하다 보니까 실무자도 어쩔 수 없이 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주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이게 주의면 사실…… 맞습니다. 주의가 맞긴 합니다. 부당한 업무는 맞는데 실무자가 고의로 그런 것은 사실 아니었고요.

○소위원장 윤준병 그래서 주의지, 그렇지 않으면 시정인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19번에 대해서는 FTA 기금은 저희들이 농특회계 전입금이라든지 공자기금 예

수금을 받아서 예산이 모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거는 결산이 아니라 나중에 부대의견 쪽에서 달아 주시면 사실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1번도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 좀 오해가 있으신 게 펀드는 결성일이 아니라 등록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등록일 기준으로 하면 기준을 다 지키고 있고요. 자펀드는 1년에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투자하게 만들기 위해서 1년에 25%, 2년 차 50%, 3년 60, 80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이게 없으면 투자를 안 해서 돈놀이할 수도 있고요. 또 1년에 100% 하라고 그러면 막 투자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도 지키지 못하면 또 보수를 깎는다든지 조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실투자는 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겠습니다.

22번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교육도 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18번의 경우 윤준병 소위원장님께서 시정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국회에서 결정된 대로 제대로 집행이 안 됐으니까 시정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14번은 제도개선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15번도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16번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런데 아까 차관 말씀하신 내용에 지금 납부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납부기한은 법에 규정이 없고요. 사업 허가, 농지를 전용해서 다른 걸로 절차가 진행될 사업 허가 때까지만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납부증을 받아서 사업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기간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것들은 1년 내에 납부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소위원장 윤준병** 이를 그러면 허가 때 의무적으로 납부필증을 첨부해서 제출하는, 그러면 더 확실히 납부가 될 것 같은데 왜 납부율이 낮다고 그러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미납부가 42% 된 이유는 지금 예산서상에는 납부가 안 돼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납부를 안 한 게 아니라 허가……

○**소위원장 윤준병** 기한 미도래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기한이 미도래돼서 안 된 거지 실제로 기한이 있음에도 안 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일단 허가가 납부기한이라고 보면 100% 납부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거의 한 97~98% 납부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허가받을 때 이거 첨부 안 하면 허가를 안 해 줄 건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300억 정도는 나중에 보면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윤준병 그 부분은 좀 의아……

제도개선은 수용하시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윤준병 그다음에 17번,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윤준병 18번은 정희용 위원님께서 시정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시정은 좀, 정희용 위원님 말씀도 저희 공감하고요. 다만 시정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 중에서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환수를하거나 사업 방식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 사업은 이미 끝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정희용 위원 그러면 징계를 해야 되겠네요, 끝났으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징계는 또 불법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 징계가……

○정희용 위원 국회에서 다 결정한 것을 마음대로 바꿔 가지고 해 놓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음대로 바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희용 간사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정희용 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심의 확정할 필요도 없네요, 이제 다 그냥 정부에서 협의해 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이것 딱 1건이었고요. 저희들이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다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내부 사정이 있어서, 담당 공무원의 의도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런 사정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정희용 위원 그러면 이거 주의로 하시되 담당하시는 정책관이 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다음, 20번은 부대의견을 달자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이거는 결산은 아니고……

○소위원장 윤준병 결산은 아니니까 부대의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부대의견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다음에 21번 수용하셨고.

○문대림 위원 21번, 아까 차관께서 실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겠다라고 했는

데 실투자가 저조한 이유가,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개선을 한다는 거지요? 실투자가 저조한 주요 원인이 뭡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실제로 실투자는 1·2·3·4년 이렇게 자기들의 의무 비율을 보면 그렇게 부진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몇 개 나오는데 만약에 실투자 규정 25%를 안 지키게 되면, 25·50·60·80을 안 지키게 되면…… 자기들이 관리보수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짜리 펀드면 여기에 대해서 1년에 2% 정도를 보수로 줍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인건비 주고 하는데 그 보수를 깎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깎게 되면 자기들 수입이 줄어드니까 사실 대부분 다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가 예외적으로 발생하니까요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도를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불확실하거나 투자 환경 조성이 안 되면 실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기업들은 사실 시장이 안 좋으면 투자 안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제도개선으로 그런 것을 유인하겠다는 것인지.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농업정책관입니다.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케이스가, 저희가 2010년부터 모태펀드를 해 왔는데 지금까지 조성된 게 한 120개 정도 펀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런 식으로 투자의무 비율을 어긴 건이 5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흔히 발생하는 케이스는 아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위원님 말씀 주셨던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활성화시킬 거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IR이라든지 이런 부분 행사를 적극적으로 좀 더 유치를 해서 투자자와 투자조합 간에 서로 발굴하는 과정들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해야지요.

○**문대림 위원**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렇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계획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 좀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리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농금원 내에도 발굴하는 담당자가 있고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아니, 말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투자가 안 이루어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알겠습니다. 그런 것 고려해서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하여튼 지침에 1차에 25% 하라고 돼 있는데 25% 못하고 스마트농업 3.7%, 영파머스 펀드 10%, 그다음에 나머지 3건도 더 있다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니요. 위원장님, 그것은 펀드가 결성되는 것하고…… 결성되고 나면 그걸 우리 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등록 기간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원래 펀드가 활동하는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되면 활동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 결성일을 등록일로 바꾸게 되면 실제로는 25%가 다 넘

어갑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오케이, 제도개선 하시고.

다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혁신정책관 소관은 6건입니다.

23번, R&D(연구개발) 사업 미환수액의 조속한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실효성 제고 필요는 임미애 위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향후 미환수 금액의 조속한 환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불성실한 과제 수행 등 부적절한 사유 발생 시 제재부가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 24번, 밭농업 기계화 및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 필요는 임미애 위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밭농업 기계화 및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개발 관련 연구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5번,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보조금 관리 강화 및 실집행률 제고 필요는 이만희 위원님과 임미애 위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실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예산안 편성 시 전년도 이월 규모를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의 금액을 반영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에 26번, 철저한 보조금 관리를 통한 무기질비료 수급안정 지원 강화 필요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보다 철저한 보조금 관리를 통해 예산의 실집행률을 제고함으로써 무기질비료의 수급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7번,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이행실적 개선 필요는 임미애 위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저조한 실적을 개선하기 위하여 친환경농가의 실질소득을 보장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드론 농약 살포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친환경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소비시장을 창출하는 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제안하셨습니다.

28번, 도시농업관리사 제도개선 필요도 임미애 위원님과 이만희 위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농업관리사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 및 교육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제안하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23번입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은 2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2건이 맞습니다. 그

런데 제재부가금은 표절이라든지 연구가 불성실한 경우에 합니다. 그래서 많은 건 사실 좋은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환수 처분에 대해서 돈을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산했거나 재정력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사업자 뽑을 때 재정이라든지 이런 상태를 봐서 제대로 환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24번, 밭농업 기계화나 여성친화형 농업은 저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구가 줄어서 사실 신규 사업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AI 접목한 기계라든지 다시 늘리는 것을 예산에 반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25번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도 사실 이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유가 다양합니다. 추경이 안 됐거나 사업자 선정이 늦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예산은 적정 규모가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26번, 무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안 되는 이유가 비료가 줄거나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이 실제로 실집행되는 데로 가야 되는데 못 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실집행되는 데로 잘 배분되도록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좀 바꾸겠습니다.

27번입니다.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비하고 생산의 선순환 체계가 연계돼 있지 않습니다. 소비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생산에 대해서 보조금을 더 드리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 쪽에서 소비를 늘리고요. 물론 생산할 때도 직불금을 늘려서 두 관계가 선순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28번은, 사실 도시농업관리사는 실제로 1만 3000명이 배출돼 있는데 활동은 1400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밭농업 기계화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소규모 농지, 분산 농지의 구조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 이게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추진해 온 생력기계화와 관련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돼 왔다고 보는지, 그렇게 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저는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사실……

○**문대림 위원** 생력기계화에 대해서 그렇게 내세울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맞습니다. 논농업은 99%고요 밭농업은 한 67%……

○**문대림 위원** 밭농업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맞습니다. 밭농업 육십……

○**문대림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기계화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정책적 변화를 가져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셨는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어쨌든 경지 조건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가만 놔두고 생력기계화를 추진한다고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 말씀이 맞고요. 왜냐하면 소규모 농가가 기계 사서 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이제 임대사업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 공동 영농이라든지 활성화돼야 기계를 사서 비용이 떨어지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밭농업이 저조한 이유는 정식하고 수확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농이 규모화가 되고 하면 그것을 일관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동시에 해야 됩니다. 100% 저희 동감하고요. 그런 쪽으로 지금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금 이대로 가면 이 구조가 한 10년 뒤에도 똑같을 것 같은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문대림 위원** 한번 파격적인 안을 만들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23번 제도개선으로 수용, 25번 제도개선으로 수용, 26번 제도개선으로 수용, 27번도 제도개선으로 수용, 나머지는 수용.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 식품산업정책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1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정책관 소관은 5건입니다.

29번, 식품기업 창업지원 사업의 중복지원 방지 필요는 청년식품 창업 패키지 사업의 유관 사업과의 중복 지원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식품 창업 패키지 사업의 유관 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사전에 식별·차단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체계를 개선·정비할 것입니다.

다음 19페이지 30번, K-미식 뷔 활성화 사업의 유사 사업 중복 개선 필요는 어기구 위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K-미식 뷔 활성화 사업이 관계부처 간 유기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중복 사업 통합을 검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에 31번, K-미식 뷔 활성화를 위한 해외 우수 한식당 홍보 강화 필요는 주철현 위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별도의 외국어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해 해외의 잠재 소비자에게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제도와 이에 따라 지정된 우수 한식당에 대해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 20페이지 32번,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지양 및 사업 효과 제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가 승인한 예산의 임의 사용을 지양하는 한편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사업에 영세 자영업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소비자들의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 33번, 식품가공원료 매입 사업의 정책지원 편중구조 등 개선 필요는 이만희 위원님과 임미애 위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가공원료 매입 사업에 대해 업종별·지역

별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여 신규 참여자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국산 농산물 구매 이행률 제고를 위한 사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제안하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말씀드리겠습니다.

29번입니다.

청년식품 창업 패키지하고 농식품 벤처육성지원 사업은 사실 대상자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농식품 벤처육성에 대해서는 벤처라든지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 창업에 대해서는 청년식품 창업 패키지로 이원화시키는 방안을 해서 원천적으로 중복이 안 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30번입니다.

K-미식 뷔 중복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문화관광부 요청에 따라서 K-미식 뷔 활성화 사업을 대책에 넣다 보니까 좀 중복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조정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통합하는 것은 이게 부처가 다르고 해서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31번입니다.

한식당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수용해서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2번입니다.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들이 영세 식품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다가 지금 배달앱이 너무 수수료가 비싸서 저렴한…… 2%입니다. 다른 것은 78%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게 예산을 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적은 위배되지 않았지만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마는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국회 통과한 예산 기준을 보면 사실 이것은 좀 수단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념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가 실제로 체감하려면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배달앱이 활성화되려면 대규모 음식점이 많이 들어와서 그걸 많이 이용하다 보면 거기에 들어 있는 영세 자영업자·식품업자들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영세만 해라 이렇게 되면 오히려 영세 식품업자들이 좀 이렇게 덜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유념해서 영세업자가 좀 손해를 안 보도록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번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대부분 자금들이 기존 업체의 대환자금에 활용되는 면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신규 사업을 15%로 했고요. 30년까지는 30% 늘려서 신규 업자가 많이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번은 검토보고에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겠다는 거지

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정은 아니고요.

○**소위원장 윤준병** 시정이 아닌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시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원장 윤준병**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윤준병** 그다음에 30번에 ‘중복 사업 통합을 검토할 것’은 좀 빼 달라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있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좋아요.

다음은 식량정책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21페이지입니다.

식량정책관 소관 6건입니다.

34번, 정밀안전진단 사업시행자 선정의 경쟁제한요인 점검 및 개선 필요는 이만희 위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수리시설 정밀안전진단 사업시행자 선정과정의 부당한 경쟁제한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 35번, 시장격리곡 매입자금 부채액에 대한 재정통제 강화 필요는 윤준병 위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시장격리곡 매입자금 부채액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공하는 등 적절한 재정통제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제안하셨습니다.

36번, APTERR 사무국 운영비 보조금의 일반회계 이관 필요는 주철현 위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APTERR 사무국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을 양곡관리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것이라는 사항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37번, 정보화사업의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통한 이월 방지 노력 필요는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정보화사업에서 ISP, ISMP 수립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의 집행 지연 및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다음 23페이지 38번, 콩 수매·비축 계획액 현실화 필요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수매대금 지급 지연 및 추가적인 금융비용 지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콩 수매·비축 계획액을 수급관리정책상의 계획물량에 맞게 현실화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39번,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수 미공급 문제 해소 필요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개발청,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새만금기본계획의 재수립을 완료하고 농업용수 미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답변드리겠습니다.

34번입니다.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지금까지 관계가 없으면 0%, 유사하면 30%였는데 이 30%는 80%로 늘리고요, 0%는 60%로 해서 타 분야와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하겠습니다.

35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연산별로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 상세하게 해서 심의 과정 때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번입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줄에 보면 ‘사무국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19억 5000만 원’은 사무국 운영비가 아니라 수원국에 갔을 때 운용비입니다, 운송비라든지. 그래서 이건 단어를 좀 고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국 운영비는 이미 ODA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좀 고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7번,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분 ISP나 ISMP를 합니다. 다만 지적하셨듯이 이거는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좀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ISP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번입니다.

총 수매·비축 계획액 현실화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실 최대한 예산을 따려고 노력하지만 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추경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현실화해서 계속 재원을 적정하게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주의가 아니라,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문제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번입니다.

새만큼에 대해서는 MP는 새만큼개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이 올해 내년 예산에는 대폭 증액해서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38번과 관련해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쌀 생산량 조절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관련해서 소외받는 지역이 제주도입니다. 제주 밭콩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것에 대한 대안이 백번 얘기해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정작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확히 못 살폈지만 어쨌든 23년부터 25년 사이에 재배가 대폭 늘었지 않습니까,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문대림 위원** 그런데 국산콩의 시장성이 대해서 과잉 생산, 판로 미확보 이게 이유가 되게 되면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농업인들께 불편을 끼쳐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국산콩이 시장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가격 문제고요. 물론 국산콩은 지금……

○**문대림 위원** 그러면 논 타작물, 논 타작물 하면서 계속…… 대표적인 논 타작물이 콩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생산량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텐데 어쨌든 판로 미확보가 이슈가 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올해 그런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의 생각은 이겁니다. 수입콩은 지금 킬로그램당 1400원에 팝니다. 그런데 국산콩은 거래가가 거의 5000원에 유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산콩을…… 물론 국산콩은 1년에 10만t 정도는 민간에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국산콩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나머지는 안 되는데 저희들의 생각은 그겁니다. 국산콩을 많이 심되 아까 말씀하신 기계화라든지 규모화를 시켜서 단가를 낮추고……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생산비를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라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생산성을 높여서 기업들이……

○**문대림 위원**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갖춰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갖추게 해서 민간에서 쓰게 해야 됩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원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래서 그걸……

○**문대림 위원** 다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제주도는 쳐다보지도 말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제주도는 저희들이 콩을 수매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수매 기간 연장한 게 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제가 제주 콩에 대해서는……

○**문대림 위원** 종 수에 관한 얘기도 안 들어 주고……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그 말씀 많이 하신 거 알고 있고, 제가 다시 한번……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논콩인 경우에 어쨌든 생산비를 낮추는 부분까지 해서 모든 지원 다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 경색 현상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맞습니다. 위원님 저기……

○**문대림 위원** 송미령 농정이 책임질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제주 콩이 사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면 제주도 콩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내가 만일 농가라면 내가 원래 많이 나는데 나는 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확답은 못 드리지만 제주 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문대림 위원** 지난 차관님은 제주 콩 대책을 연구해서 마련해서 저희 방에 와서 보고한다고 했거든요. 안 하고 가 버렸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가셨지만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약속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권장하는 작목인데 어쨌든 수요 기반에 관한 문제, 판

로에 관한 문제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셔 가지고 풀어 나가지 않으면 이것 또한 문제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맞는 말씀입니다.

○**문대림 위원** 같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윤준병** 38번은 제도개선으로 수용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윤준병** 대신에 37번, 쌀 수급예측시스템 구축 사업 이 부분 수용을 하셨는데 이거 빨리 하셔야 되는 당위성은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사전적 생산 조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직파나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알려면 이런 걸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서둘러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유통소비정책관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소비정책관 소관은 7건입니다.

40번, 가격연동 보조사업의 집행기준 현실화 필요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유사한 가격연동 보조사업이 편성될 경우 편성사유 및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기준을 현실화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41번, 농식품바우처 카드의 취약계층 낙인효과 개선 필요는 윤준병 위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바우처 카드로 인하여 취약계층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42번, 예비비 배정절차 준수 및 사업효과 제고 필요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재정법상 예비비 배정절차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효과가 전 유통채널 및 전 지역에 골고루 나타날 수 있도록 가맹점 수 확충, 지역별 접근성 확대 및 사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43번, 자조금단체의 자체재원 이월금 과다 누적 개선 필요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조금단체의 자체재원 이월금 규모가 과다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리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44번, 연례적 사업실적 부진 개선 필요는 이만희 위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가격 안정지원 사업의 연례적 사업실적 부진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과거 집행실적 및 제도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계획안을 편성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에 45번, 온라인도매시장 정산지원사업의 사업의무액 적정화 필요는 임미애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들의 여신 이용현황 및 사업의무 이행현황 등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업의무액을 적정규모로 재설정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제안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46번,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의 공사지연 개선 필요는 이만희 위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의 공사지연으로 총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연도 사업비를 편성하며 향후 하자보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제도개선을 제안 하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40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하신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사실 이게 집행되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원하는 거였는데 협의 과정에서 좀 기준이 너무 높아서 집행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번입니다.

바우처 카드에 대해서는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우처'라는 용어도 삭제해서 쓰는 사람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부양곡복지 수요, 그 포장지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좀 개정을 해서 그런 효과가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2번입니다.

예비비 배정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지켜야 됐었는데 사업이 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할인지원이 좀 편중된다는 말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시장도 늘리고 가입자 수도 매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활상품권에 대해서는 서울하고 경남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80%였는데 이거는 앞으로 올해부터는 균형되도록, 서울·경남은 한 30% 낮추고 나머지 70% 해서 인구 수에 비례해서 하도록 좀 제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43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빼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조금을 걷게 되면 정부가 매칭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사업에 써야 되지만 그 나머지, 자조금을 걷었지만 본인들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을 해서 좀 쌓아 놔서 다음에 혹시 수급 문제가 생기면 수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걸 매년 다 써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쓸 돈이 없게 됩니다. 물론 그걸 또 너무 많이 해 놓으면 돈장사 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별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겠지만 이게 과다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딱 써야 된다 이런 건 저희들이 볼 때 사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제도개선을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의무로 한다는 건 사실 좀 맞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번입니다.

연례적 부진에 대해서는, 이건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채소 가격 안정은 이게 가격이 불안정해야 다 집행되는 거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이 있더라도 사실 집행이 안 됐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반 정도 대폭 낮췄고요. 그리고 채소 가격 안정은 수입보험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주는데 집행이 잘되도록 계속 이

런 제도를 바꿔 나가겠습니다.

45번입니다.

온라인도매시장도 저희들이 초기라서 1200% 이렇게 하다가 600%로 낮췄습니다. 좀 급격하게 낮춘 면이 있습니다마는 초기였고 다른 사업들을 고려해서 그 비율은 적정 수준으로 다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46번입니다.

가락시장 하자보수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어서 저희들이 보수를 완료했고요. 지금 이게 자연되는 이유는 채소2동이 좀 늦어지면서 채소1동에 대해서는 다시 기재부랑 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마무리되도록 기재부랑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40번 면세유 관련된 내용은 요구사항이 시정·주의·제도개선 세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건 주의 정도는 해야 기재부가 움직일 것 같아요, 주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기재부에다 주의를 주시면 되는데 저희들은……

○**소위원장 윤준병** 여기서 해서 전달해 주세요, 주의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러면 기재부는 계속 그럴 겁니다. ‘너희들이 맞아라. 우리는 모르겠다’ 그럴 수……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에는 또, 이것 가지고 와야 예산편성할 때 또 한번 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취지는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다음 42번 이건 국가재정법 예비비 배정절차를 위반했다는 거지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반한 거지, 소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저희들이 고의로 한 건 아니고요. 사실 법을 위반해서 처벌하는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따져 보면 저희들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일어나면 안 되지만 사실 일하다 보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서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그래서 콩 대책 세울 거예요, 말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세우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가야지.

○**소위원장 윤준병** 그래요, 제도개선.

그다음에 43번은 삭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다 됐지요?

그다음 축산정책관 소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위원장님, 45번도 제도개선으로 하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윤준병** 예, 제도개선.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관 소관은 4건입니다.

47번,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사업이 기본 여건 미비로 인해 불용되지 않도록 기금운용계획 작성 시 실제 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제안하셨습니다.

48번,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사업의 지출 조정 검토 등 필요는 이만희 위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 개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조사료 및 방목생태 용자 사업의 집행률을 고려하여 지출 조정 등을 검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49번, 축산환경관리원의 계약 체결 법령 위반 재발 방지 필요는 윤준병 위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이 계약사무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 50번, 말산업육성지원 사업과 마사회 운영경비 간 기능·역할 구분 필요는,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운영경비 집행 전반을 점검하여 재원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하고 동일 사업을 중복 집행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일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28페이지, 47번입니다.

47번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상품 출시가 늦어졌기 때문이고요. 그런 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번은 여기 보면 이만희 위원님께서 집행률이 낮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낮은 건, 10억 짜리 용자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6억 집행되면서 60%였고 나머지 보조사업은 거의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수용해서, 용자사업은 예산을 좀 낮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개선은 이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9번, 축산환경관리원입니다.

사정을 들어 보니까 이 용역을 체결할 때 장기계속사업인 줄 알고 이렇게 연간 나눠서 계약을 했다고 그립니다. 사실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위반이기 때문에 시정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사정을 보니까 본인은 정기계약처럼 장기계약인 줄 알고 그랬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의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50번 말산업에 대해서는 저는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마사회 자체사업이라든지 축발기금 사업은 반드시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사업을 잘 정리해서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알겠습니다.

47번은 제도개선, 49번은 주의로 해 달라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 소위원장 윤준병 주의.

다음은 국립종자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30페이지, 국립종자원 1건입니다.

51번, 종자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필요는 접수 건수가 3건에 불과하는 등 운영이 좀 미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 방식의 다각화, 고령 농업인 등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조정 신청 대행 및 조정 성립에 대한 유인체계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세요.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51번에 대해서는 지금 주의인데 저희들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종자 문제가 있어서 협의를 포함해서 된 게 350건입니다. 그중 345건은 이미 협의해서 끝났고 나머지 5건이 조정제도로 왔는데 이 조정제도 자체가 아시겠지만 실제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정을 해도 1건은 못 하겠다고 그랬고 2건은 포기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350건 중 3건이기 때문에 되게 적은 상황이라서 사실 주의는 아니고요.

만약에 이 제도를 더 확실하게 하려면 위원회로 만들어서 행정심판 정도가 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따르게 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안 따르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걸 심판 제도로 바꿀 건지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

다음,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충연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소관 7건에 대해서 모두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제도개선 요구를 하셨고 이 건에 대해서 정부는 모두 수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방역정책국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1건에 대해서 제도개선 요구를 하였는데 이것도 수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그 시정요구명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52번입니다.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개발 사업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 개발 사업의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채로 계속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의 사업 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동 사업을 통한 정부 출자의 지속 여부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현재 가동 중인 발전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동시에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에 적기 대처하여 고장으로 인한 장기간의 가동 중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3번, 기후변화 실태조사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공사·농촌진흥청·산림청 3개 기관의 통합 기후변화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결과가 등록되는 농업·농촌 기후변화정보시스템이 검색 플랫폼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54번,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에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사업 공사비 예산 1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2025년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2025년도 공사비 예산의 일부가 이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 동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 한도 내에서 공사비를 편성할 것.

33페이지, 55번입니다.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업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와 이행 점검을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

56번, 동물복지·안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유실·유기동물의 수가 상당한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줄이고 반려인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유실·유기동물의 분양·기증률을 보다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34페이지 57번,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로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통계 기반을 마련할 것.

35페이지, 58번입니다.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사업의 현장 점검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 포기에 따른 제재 강화, 사업기간 및 연부율 조정 등 사업 추진체계를 개선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36페이지, 방역정책국 소관입니다.

가축질병 검사실 신축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질병 검사실 신축 사업과 같은 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과 설계·공사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면밀히 사업을 계획함으로써 반복적인 집행 부진을 방지하여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것.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활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저희들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출자 한 부분이 있고, 물론 출자 자본금도 있습니다마는 구분해서 세우도록 해서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고요.

고장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해서 좀 빨리 그리고 비용이 안 들게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3번입니다.

기후변화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미 농업·농촌 기후정보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검색이 되도록 했고, 앞으로는 그 3개 기관이 정보를 다 같이 넣어서 편리하게 보도록 하겠고 내용도 좀 고쳐서 도움이 되는 정보 위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54번, 기후변화대응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남에서 땅 한 필지를 못 사서 좀 늦어졌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내년 예산에서는 대폭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55번입니다.

동물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운영하다 보니까 농지법·건축법 위반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사업을 했는데 막상 추진이 안 돼서 저희들이 계속 동물보호시설별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데 앞으로는 가능한 그런 보호시설만 예산을 편성하는 등 해서 집행률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56번, 유실·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분양이 잘되는 건, 상태가 좋은 개들은 분양이 되지만 좀 병들었거나 이런 개들은 분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가 보면 동물보호시설이 되게 외진 데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용인 같은 경우에는 카페를 빌려서 홍보를 합니다. 하여튼 그런 걸 해서 분양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7번, 통계 기반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HS코드라든지 이런 통계를 해서 통계 기반을 확실히 해서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8번, 반려동물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이 주민 반대 때문에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까지 주민들에 대한 친화 공간, 그리고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되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물론 지금까지 사업기간이랑 연부율을 다 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잘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문제가 있는지 좀 더 봐서 제도개선 사항이 더 있으면 해서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가축질병 검사실 신축입니다.

전북은 이미 완료를 했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경 문제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내년까지는 계획대로 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제주도 측에, 잘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 수용하시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만 52번의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개발 사업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다음은 부대의견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37페이지, 부대의견(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들 중에서 부대의견으로 채택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모두 16건이고 정부 입장은 1건 빼놓고 다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시정요구사항 중 부대의견으로 전환하시기로 결정하신 12페이지의 사항 1건이 추가되겠습니다.

그리면 1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 연번 1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시작되는 농축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사업효과 및 적정 배분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치한 제도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2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새로운 형태의 자연재해나 병충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운영기준을 설정할 때 발아율 등 품목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작물재해보험과 수입안정보험 예산을 가입 수요에 부합하게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5번,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부와의 규제 개선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6번, 농림축산식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하여 농산물 가격 상승 등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7번,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전까지 가공용 쌀 추가공급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8번,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관리양곡 대여 정책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고 관련 우려에 대하여 오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한다.

9번, 농림축산식품부는 논콩, 가루쌀 등 논 타작물의 수요 부족 문제에 대하여 재배면적 감축을 제외한 수요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10번,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김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김치 원산지 위반 단속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11번,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서 개정안의 취지에 맞는 예산집행체계 및 성과지표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다음 페이지, 12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노력한다.

13번, 농림축산식품부는 극심한 논콩 수해 피해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14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 및 예산의 혜택이 도매시장법인 등 유통업자가 아닌 국민 및 농민에게 귀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5번,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미 농축산물 검역 완화에 따라 검역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어 미국산 사과 수입 시 국내 사과 생산이 감소되는 등 국내 농산물 시장에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16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입과정에서의 위생 검역절차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정책임을 고려하여 관련 사항을 충실히 검토한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16개의 부대의견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 수용하고요. 다만 2개에 대해서는 문구를 좀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9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논콩이나 가루쌀 같은 건 재배면적이 좀 유지가 돼서 국산 양곡 자급률이 제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재배면적 감축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사실 아마 이게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안 문구를 마련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구 대신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논콩 등 전략작물직불제 품목의 수요 확대를 통해 재배면적을 유지·확대하고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고 해 주시면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시 한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는 논콩 등 전략작물직불제 품목의 수요 확대를 통해 재배면적을 유지·확대하고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고 하면 아마 위원님들 의도랑 똑같은 게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것만 바꾸면 되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리고 15번에 보시면 여기 계신 서천호 위원님하고 정희용 위원님께서 내셨는데 저는 당연히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앞단을 보시면 ‘한미 농축산물 검역 완화에 따라 검역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어’, 사실 검역절차는 완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역절차가 빠르게 진행……

저희도 사실 안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문구를 좀 빼 주셨으면 하는 거고, 저희들이 그래서……

○**소위원장 윤준병** 전체를 빼라는 거예요, 문구만 빼라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전체는 빼면 안 될 것 같고요.

○**소위원장 윤준병** ‘미국산 사과 수입 시’부터 하자 이런 얘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래서 저희들이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소위원장 윤준병** 어떻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과 등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이렇게 하시면……

○**서천호 위원** 차관님, 너무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이 문구 자체가 나오게 된 게 상임위 때 여러 차례 질의도 됐고 또 우려되는 내용들을 정희용 간사님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시했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 우려를 이 두 문단에다가 집어넣어서 표시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냥 일반론적으로 농산물 개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자. 그러면 부대의견을 붙일 이유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내가 앞의 9번 항목도 끼어들까 하다 말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농림부도 아직 확신을 못 하더구먼.

그러면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을 적시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명시를 해 줘야지 그걸 가지고 그냥 통쳐 가지고 대충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그렇다면 검역절차가 빠르게, 검역절차가 여러 가지 제한적인 사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한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적인 관례라든지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관세 협상이라는 게? 다 국제적인 룰에 따라서 지금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검역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라는 그런 개연성을 놓고 문구를 수정하는 건 모르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부대의견은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상임위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지금 현재 진행되는 그런 사안이고 또 농가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는 부분이고 걱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부대의견이 필요 없는 사정이 확정되면 더없이 좋지만 또 우려되는 사정이 발생한다 그러면 농민들 걱정도 덜어 줘야지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부대의견은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그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검역절차 완화는 저희들이 정부 입장으로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절차 완화는 법을 고치는 것만큼이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빼 주시고 대신 ‘한미 농축산물 검역절차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미국산 사과 수입 시’까지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우려하시니까. 그런데 검역절차를 완화한다는 건 사실 정부 입장도 그렇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사실 마음대로, 검역을 하는 사람들이 위배해 버리면 이거야말로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반드시 빼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농축산물 검역 완화’라는 부분을 빼자는 얘기지요? 그러면 ‘농축산물 검역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어’ 그건 괜찮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사실 위원회에서 나가면 우리 농업인들이 보시기에……

○**소위원장 윤준병** 이렇게 조정하면 어때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의 검역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미국산 사과 수입 시 국내 농산물 시장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뭐 이 정도.

○**서천호 위원**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빠르게 진행될 경우로 해서 가정법으로 놓고 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검역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부분 이 문구까지 빼면 안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빠르게 진행될 수도……

○**서천호 위원** 그래서 방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농축산물 검역 완화에 따라’ 이 부분

은 생략하더라도 그 뒷부분은 붙여야 되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될 경우’ 이렇게 해서 나머지 문구는 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거는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업인들께서……

○**서천호 위원** 아니, 이건 왜냐하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받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가에서 걱정이 많은 거예요. 걱정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만약 이런 문제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마저도 농민의 걱정을 안 들어주겠다고 그러면 부처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수용하는데요. 제 기우일 수 있는데 만약에 농업인들께서 이걸 보시고 나서, ‘검역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 대책을 마련해라’ 그러면 상임위에서 이걸 인정하는 건가……

○**서천호 위원** 그것까지는 부처에서 걱정하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빠르게 진행될 경우’라고 문구를 수정하시자고 말씀하셨어서 그렇게 수용하는 것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수용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지요?

○**문대림 위원** 저 의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3번,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운영기준을 설정할 때 발아율 등 품목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제께 당근 얘기할 때 장관께서 당근에 대해서 좀 아는 척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말을 안 했는데 당근이 파종 시기가, 경남 김해 쪽 한 15% 정도 해요. 그다음에 평창한 25~26% 정도 해요. 이게 파종 시기가 다 다릅니다.

경남이나 강원 같은 경우에는, 발아할 때 수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파종 시기가 2·3·4·5월이어서 건조하지가 않아요. 발아가 다 됩니다. 그래서 80% 발아율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제주인 경우에는 국산 당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 화산회토의 특성, 겨울철의 온화한 기후 이런 것들이 월동채소……

대한민국의 월동채소를 어디서 다 생산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대부분 제주고요.

○**문대림 위원** 대부분 제주 아닙니까? 무, 월동무 99.99% 아닙니까? 그리고 당근 100% 아닙니까? 보호해야 되지요? 이걸 보호 안 하면 이게 무너지거든요, 과잉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7월, 8월인 경우에 가뭄이라는 자연재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발아율 80%를 적용하는 게, 당근에 대해서 아는 척하면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안 되는 거지요. 고려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는데 저희 입장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나 하면

제주도에서 여섯 번인가를 빨아가 안 돼서 보험을 했던 겁니다. 가장 합리적인 보험은 이걸 겁니다. 빨아가……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부정 수급의 사례가 약간 있었어요. 약간 있었는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 부처 차관이 잘못한다고 해서 차관 다 처벌할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맞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런 징벌적 처벌이 어디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문대림 위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부정 수급이 있었다면 그 농부만하고, 농림부에서 그 사람에게 징벌을 가하면 되지요. 몇 년간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게하고 또 적당한 제재를 하면 되지요. 현장에 가서 딱 확인하면 되지요.

그렇게 몇 건의 부정 수급이 있었다고 해서 전체 농가들이 피해를 봐야 된다? 이것 무슨 패션한 농정입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빨아울과 관련해서 혼돈이 있는 게 뭐냐면 씨를 뿌리면 이게 수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빨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동인 경우에는 7월 말, 8월 초에 파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또 태풍도 오고. 그러면 빨아가 안 되면…… 가뭄이 지속되면 빨아가 안 되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다시 관수 장비 걷어 내고 다시 트랙터 집어 넣고 다시 종자대를 들여서 파종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비용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재파종, 삼파종, 어떤 때는 사파종까지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강원 평창이나 경남 쪽 당근하고 빨아울을 놓고 비교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윤준병** 자, 이 내용 갖고 논란하지 마시고……

○**이병진 위원** 저 한번……

○**소위원장 윤준병** 잠깐만요.

이 3번 내용은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하는 게 지금 문대림 위원님 취지의 말씀이시지요?

○**문대림 위원** 예.

○**소위원장 윤준병** 알겠고요.

이병진 위원님.

○**이병진 위원** 제가 한마디도 안 하고 오전을 보내려고 했는데 언어의 유희가 너무 심해요. ‘노력한다’ 이것의 해석 여부는 무궁무진한 겁니다. 대통령께서 검토한다라는 공무원들의 표현은 안 하겠다는 의미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농담 반 진담으로 얘기하신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납니다.

자, 추석 전에…… KBS 뉴스에도 그렇게 크게 나왔고 그다음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도 지금 시장의 수요가 있고 또 적지 않은 기업들의 목소리, 134개의 기업들이 가공용 쌀을 획득해서 우리의 상품을 만들어 수출한다면 K-식품의 위상이 더 제고되고 가격경쟁력도 높아지는데 그것 자꾸만 갖고 있지 말고 풀어 달라. 물론 가공용 쌀이 아닌 다른 쌀을 써 달라라고 입장은 취하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어제 장관이 얘기했는데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이것 노력했어, 여러분 지금 노력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맨날 출근해서? 이게 언어의 유희라는 거예요. ‘마련한다’라고 쓰세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 차관님, 방금 문대림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단순히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문금주 위원 어제 마늘도 얘기하시고 당근도 얘기하시고 그랬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문금주 위원 그래서 이것은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막연한 표현보다는 여러분들이 재해보험 운영기준을 좀 더 현장감 있게, 현실감 있게 그때그때 빨 빠르게 대처를 해 줘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좀 적극성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저도 문대림 위원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것을 예를 들어서 보험을 언제 가입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70% 낮추나 60% 낮춰도 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겁니다. 만약에 당근이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면 빨아 안 됐을 때 그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보험이라든지, 단계적으로 하거나 이런 방법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80% 안 되면 보험 가입 안 해 주고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더 힘드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재해 수준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재해는 아니더라도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해서 대책은 마련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특성을 고려해서 보험을 마련하라고 그러면 당장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력한다라는 좀 이렇게 애매한 말을 쓰는데……

○문금주 위원 본인이 생각해도 이상한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차관님, 그만하시고.

이 3번 내용은 아까 말씀한 내용 포함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운영기준을 설정할 때 빨아울 등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운영하는데 지장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런데 먼저 대책을 한 다음에 보험을……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운영기준을 설정할 때 이것을 고려하라는 요구사항이니까 그것을 반영하시면 되지 그것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뭐 얘기하실 사안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부대의견은 그렇게 수용해 주시기 바라고……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고려한다……

○소위원장 윤준병 고려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15번, 아까 서천호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의 검역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미국산 사과 수입 시 국내 농산물 시장에 피해가 우려되므

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이 정도 내용도 괜찮은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윤준병** 나머지 이의 없으시지요?

○**이병진 위원** 위원장님, 그다음에 7번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노력한다'를 빼고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고려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하시면 저희들이 대책을 찾아서 그것을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병진 위원** 대책을 다 세워서, 마련해서 했는데 안 됐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이병진 위원** 다 같은 언어유희라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추석 전까지 가공용 쌀은 3만t 대여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지금 대책은 마련됐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했고요, 이번 주에 분배가 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대책은 수요조사했더니 4만 3000t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3만t.

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가공이 아니고요. 일반 밥쌀용입니다, 3만t은. KREI가 밥쌀용이 4만 3000t 부족…… 아니, 일반에서 했는데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적게 3만t을 했고요, 그건 밥쌀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밥쌀용이고, 가공용 쌀 추가공급대책은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사실 지금 가공용 쌀은 저희들이 계획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요, 쌀 수급 문제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공용 쌀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토론회 했지만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쌀 쌓아 놨다가 쌀값 떨어지면 2500원에 사서 1000원에 풀고, 수입쌀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가공용 업체에서 농가랑 계약재배를 하거나 해서 실제로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가공용 쌀 중에 주류용을 빼면 64만 4000t이 가공용입니다. 그 중에서 28만t을 정부와 관계없이 그것 쓰는 사람이 농가랑 계약을 해서 그만큼 재배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다가 2년, 3년 지나면 그것 가지고 싸게 만들어야지 이런 사람들…… 이런 확률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게 지금 유통업체들 얘기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가공업체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쌀값 떨어지니까 3년 지나면 풀겠지, 저는 그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공업체에서 농가랑 계약재배를 하거나 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앉아서 항상 수입쌀 나오기를 바라고 가공용 쌀 나오기를 바라면 우리나라 농업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병진 위원님, 그래도……

○이병진 위원 ‘마련한다’고 하라니까요. 마련했는데 안 됐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이병진 위원 ‘노력한다’ 빼라니까. 노력 안 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정책을 말씀드렸고요. 그건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마련한다?

○이병진 위원 대책 마련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이병진 위원 대책 마련한 것 갖고 오라고요. 이렇게 대책을 마련했는데 안 됐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지, 안 되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것은 수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정책, 제 개인적 말씀을 드린……

○소위원장 윤준병 자꾸 이 얘기하면 시간만 가니까, 7번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전까지 가공용 쌀 추가공급대책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오케이.

더 이상 이견 없으시지요?

○정희용 위원 잠깐만요, 15번.

○소위원장 윤준병 예, 정희용 위원님, 15번.

○정희용 위원 차관님, 부대의견 15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검역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경우에 한다고 그랬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우리 농림부에서 서울대에 용역 줬던 것에도 보면 2022년, 2024년에 미국 보고서에 비관세 장벽을 이제 저것 해야 된다라는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정희용 위원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단계에 잡혀 있지만 미국의 추진방향이 예상이 되니 우리도 거기에 맞게끔 미국의 비관세 장벽 해제 요구에 따른 우리 농산물을 방어하기 위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진행될 경우에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정희용 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를 ‘검역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러면 이것을 빼라는 말씀……

○정희용 위원 그냥 그대로, ‘완화’는 빼더라도 ‘농축산물 검역절차가—빠르게는 아니고—진행되어’, ‘검역절차 개선이 진행되어’ 이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검역절차 개선이라면서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검역절차는 개선할 수가 없고요.

○정희용 위원 아니, 어제 장관님이 검역절차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절차를 개선한다는 얘기는……

○**문금주 위원** 절차를 개선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소위원장 윤준병** 법적인 소관인데 그것은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빨리해 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정희용 위원** 빨리해 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 비관세 장벽이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트럼프 정부 때만이 아니라 바이든 정부 때에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소위원장 윤준병** 검역절차라고 하는 것은 법정 사항이어서 일단 프로세스를 거치는 건데 거기에 관문의 영역이, 우리 정부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빨리 끝낼 수도 있고 조금……

○**정희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역절차와 상관없이 미국 측의 비관세 장벽 폐쇄 요구에 대한 우리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맞는 말씀이고 작년에 저희들이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평소에도 만들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 내용은 아까 서천호 위원님이랑 또 상의를 해서 그 정도 넣자고 했으니까 그 내용……

○**정희용 위원** 그런데 ‘경우’는 거기에 한정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윤준병** 그 내용으로 좀…… 너무 제약하지 말지요. 정부 입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조건부로 하자고 했으니까 이것은 우리……

○**정희용 위원** 그런데 ‘경우’라고 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지 이게 빠르게 할 경우에만 대책을 마련한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잖아.

○**문금주 위원** 경우가 없잖아요.

○**정희용 위원** 부대의견 개선안이 그렇게, 개선해서 그렇게 바꿨다는 것 아니야?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내용은 앞에 ‘완화’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해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하기로 했으니까……

○**정희용 위원** 그러니까 단서를 달지 말고 그냥……

○**소위원장 윤준병** 그래야 농민들이 볼 때 예를 들면 검역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네라고 하는 인식을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조건부로 해야 농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 때문에……

○**정희용 위원** 이미 엄청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윤준병** 이제 그것은 별도로 하기로 하고 여기 부대의견은 우리가 불필요하게 농민들로 하여금 우려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하자, 걱정을 만들지 말자 뭐 이런 취지로 이렇게 단 거니까요.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어기구 위원님 피해보전직불제 그것 부대의견으로 옮기기로 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그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이 문구 그대로……

○**소위원장 윤준병** 예, 부대의견에 넣겠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윤준병 오케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장님, 제가 읽어야 문장이 된다고 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읽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여기구 위원님께서 내신 의견은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보전직불제도 시행의 종료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위원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 내용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것 포함해서 부대의견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항목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의 자구 조정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와 동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1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소관 1건과 연구정책국 4건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 고객현장지원 사업 예산 일반회계 편성 필요는 이만희 위원님께서 농촌진흥청은 향후 고객현장지원 사업 예산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 편성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전문연구원제도의 관리체계 개선 필요는 서천호 위원님 또 임미애 위원님께서 농촌진흥청은 전문연구원의 처우개선 및 경력관리 지원 등 인력 유지방안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퇴직자들에 대한 추적조사 등 정책 환류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3번, 국산품종 보급률 제고방안 강구 필요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촌진흥청은 우수 국산 품종 개발·보급이라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 4번, 민간연구 개발지원 사업 신청 활성화 필요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촌진흥청은 향후 사업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사업 신청을 촉진하는 등 사업 활

성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제안하셨고.

5번, 성과 초과달성 사업에 대한 별도 보상제도 마련 필요는 서삼석 위원님께서 농촌진흥청은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한 사업의 연구진 등에 대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제안하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1번 고객현장지원 사업 일반회계로 편성 필요는 제도개선을 수용합니다.

2번 전문연구원 제도의 관리체계 개선 필요는 지금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쪽에서는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3번은 제도개선을 수용합니다.

4번 민간연구 개발지원 사업 신청 활성화 필요는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5번 성과 초과달성 사업에 대한 별도 보상제도 마련 필요는 제도개선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님.

○**이병진 위원** 대통령께서도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경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농진청은 평화시대, 북한과 교류시대를 대비해서 전문 연구원들, 특히 북한과 우리가 바로 교류가 시작되면 식량자급률을 제고시키고 기타 농업 분야의 협력 강화에 앞서야 될 가장 최전선에 있는 연구 전문기관입니다. 그것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 전문기관인데 이런 지적 받은 것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망한 것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마는 차제에 이런 일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직률과, 연구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궁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청장께서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지금 2주 됐습니다.

○**이병진 위원** 2주가, 첫 꾃발이 개꽃발이 되지 않도록 선두에 서서 몸소 임해 주기를 앙망드립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서천호 위원님.

○**서천호 위원** 청장님, 우리 해외 로열티 지급 규모가 계속 증가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예.

○**서천호 위원** 그런데 국산품종 보급률은 정체인 상태고 또 예산은 매년 150억 정도로 투입이 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누적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로열티 지급 액수가 계속 증가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농축산물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간다는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엄청난, 시정이나 주의 사항에 저는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 분야가 어떤 특정 프레스를 가한다고 해서 결과물이 바로 나오는 그런 분야는 아니지만 더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땔기 같은 경우는 07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 거의 품종 보급률을 98%까지 올렸지만 장미나 난, 화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미진합니다. 최근 한 3년 동안 정체돼 있는데 그거를 열심히 해 가지고 보급률을 높이고 그거에 맞춰서 로열티 지급률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른 의견 없으시면 2번 내용은 제도개선으로 요청한다는 거고요.

4번 시정요구명은 이것도 제도개선 이렇게 수용하고 나머지도 다 수용하신다는 의견이지요?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국 소관 4건입니다.

6번, 실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는 정희용 위원님께서 농촌진흥청은 지역 농촌지도 사업 활성화지원 및 치유농업확산센터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 보다 철저한 집행 점검을 실시하고 실집행률 제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7번, 농업공공기술진흥사업 성과지표 및 성과측정 방식 개선 필요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촌진흥청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사업의 성과지표와 성과측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 8번,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개선 필요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촌진흥청은 지자체의 사업 실시 현황 점검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파쇄지원 대상품목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비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작업가능 범위가 넓은 파쇄기의 도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 5페이지 9번, 실집행률 제고를 통한 예산 이월 최소화 필요는 농촌진흥청은 철저한 보조금 관리와 실집행률 부진 원인을 분석해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고 실집행률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예.

6번 실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는 제도개선을 수용합니다.

7번 농업공공기술진흥사업 성과지표 및 성과측정 방식 개선 필요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쪽에서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8번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개선 필요도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9번 실집행률 제고를 통한 예산 이월 최소화 필요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셨는데 수용합

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정요구사항 7번은 제도개선, 8번도 제도개선, 나머지는 수용.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협력국 4건과 또 국립축산과학원 1건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0번,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사업 개선 필요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업진흥청은 연수생 선발 시 사후 현황조사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사업의 성과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제안하셨고요.

11번, 농림축산식품부 ODA 사업과의 연계 강화 필요는 서천호 위원님께서 농촌진흥청은 현재 일부에 그치고 있는 부처 간 협력 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사업 기획 단계부터 양 부처 간 협력 및 통합적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 7페이지 12번, ODA 사업의 민간역량 활용 확대 필요는 서천호 위원님께서 농촌진흥청은 향후 KOPIA 소장 선발 시 민간 전문가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조직 내 혁신을 유도하는 한편 국내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민간 분야 역량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13번, ODA 사업의 외교부 사업과의 중복 방지 필요는 이만희 위원님께서 농촌진흥청은 외교부 사업과의 유사·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ODA 사업의 방향성 및 세부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차별성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14번,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지역 개선 필요는 서천호 위원님과 이만희 위원님께서 농촌진흥청은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10번에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사업 재설계 필요 쪽에서는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쪽에서는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11번 농림축산식품부 ODA 사업과의 연계 강화 필요는 제도개선을 수용합니다.

12번 ODA 사업의 민간역량 활용 확대 필요는 제도개선을 수용합니다.

13번 ODA 사업의 외교부 사업과의 중복 방지 필요, 주의를 수용합니다.

14번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지역 개선 필요, 주의를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0번은 제도개선으로, 나머지는 다 수용.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부대의견 1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부대의견은 윤준병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1건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일부 부서의 수원 이전 중단 결정이 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및 균형 성장 기조에 부합되는 적절한 정책 결정이라는 점에 유념하여 현재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부서와 인력까지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부대의견을 수용합니다.

다만 중북부 기후대 적응작물 연구 등 중부지역에서 수행해야 될 기능은 수원에 잔류가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부서와 인력까지’를 ‘현재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식품 관련 부서를’로 수정하여 주시길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현재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식품 관련 부서와 인력을?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지금 인력은 부서까지 들어가면 다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요.

○**소위원장 윤준병** 부서를?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예.

○**소위원장 윤준병** 이견 없으시지요?

이것으로 농촌진흥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항목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내용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촌진흥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시정요구 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의 자구 조정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회의 산회 직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윤준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림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3번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산림청 소관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3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제시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주의 7건, 제도개선 23건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수용을 했고 위원님들께서 각각 주의, 제도개선을 요구한 6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산림청에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5건하고 5페이지 국제산림협력관 소관 1건 해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주요 세입 미수납액 관련해서 산림청은 부담금 장기간 미납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처분 등을 적극 고려하고 미수납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미수납 규모를 줄여 나갈 필요가 있으며 변상금에 대한 채권 관리를 강화하고 무단점유 방지의 효과 진작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액을 면밀히 추계하여 적정 수준으로 편성할 것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

2페이지, 2번입니다.

세입재원 없는 이월 문제에 대해서 산림청은 세입재원 없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산림조성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반납액 등 주요 세입원을 중심으로 수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기한 내 납부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액을 면밀히 추계하여 적정 수준으로 편성함으로써 이와 같은 세입재원 없는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

3번,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률 제고와 관련해서는 산림청은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미수납액의 발생으로 일반회계 및 농특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과목의 수납률이 각각 65.0%, 83%로 2022년도 대비 저조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정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납률을 제고할 것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

4번, 집행 부진 사업 점검에 관련해서는 산림청은…… 이 문구는, 정희용 위원님께서 안 계신데 오전에 저희가 정희용 의원실하고 협의를 잠깐 했습니다. 제가 협의한 문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면밀하게 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예산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 이렇게 했습니다.

5번입니다.

과다한 세목조정 지양 및 세목조정 관련 내부지침 마련 관련해서는 산림청은 매년 상당 규모의 세목조정을 통해 사업비의 비목별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으므로 비목별 집행 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연례적이고 과다한 세목조정을 지양하고 세목조정이 내부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6번, 외교부 ODA 사업과의 차별화 관련입니다.

산림청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분담금 및 한국형산림녹화프로그램 확산 사업은 내용상 ODA 사업으로 편성·집행되었어야 하므로 비ODA 사업으로 예산편성된 동 세부내역들을 ODA 사업으로 이관하고 외교부 사업과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일부 사업은 사전협의·조정을 통해 차별성 있는 ODA 사업을 수행할 것.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지금 말씀하신 공통사항과 국제산림협력관과 관련된 1번부터 6번까

지의 시정요구에 대해서 저희는 수용의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전문위원 황충연 다음은 산림정책국 소관 12건이 되겠습니다.

7번, 변상금 부과를 통한 무단점유지 관련입니다.

산림청은 무단점유지의 원상복구 추진 원칙 아래 변상금에 대한 채권 관리를 강화하고 수납 실적을 제고함으로써 변상금 부과가 무단점유를 방지하기 위한 경제적 제재로서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변상금 미수납채권의 납부기간이 경과한 구간별로 채권 관리 방식을 다변화하는 등 채권 회수 방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무단점유 우려지역 등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무단점유지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

7페이지, 시험연구비 예산집행 부적정 관련입니다.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 시험연구비 집행의 사전 검토 및 사후 점검을 강화하고 시험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내부감사 기능을 보완하며 부적정한 시험연구비 집행 규모를 제외한 실제 시험연구비 소요를 정확하게 산출하여 이를 향후 예산편성 시 반영 할 것.

8페이지 9번, 임업진흥원의 신청사 설립 관련입니다.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 신청사 설립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 공모 관련 소송 등으로 인하여 2024년도 및 2025년도 예산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2026년도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계획의 불확실성 해소와 예산집행 정상화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9페이지 10번, K-포레스트관 건립 관련입니다.

산림청은 K-포레스트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설계 및 공사 지연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연내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여 연례적인 이월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 추진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11번, 목재산업 육성입니다.

산림청은 목재산업 육성 내역사업 중 일부는 연례적으로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므로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효과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지자체를 선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페이지, 12번입니다.

목재산업 육성사업 관련입니다.

산림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연 2회 이상 나누어서 교부함으로써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것.

11페이지, 13번입니다.

목재이용실태조사 보고서 관련입니다.

산림청은 목재제품 통계분석 사업과 목재이용실태조사 사업 예산을 목재이용실태조사

보고서 발간에 임의로 통합하여 사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두 사업 예산을 통합할 것.

14번,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이행 관련입니다.

산림청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이행 점검을 강화하고 이행 점검 항목을 합리화하여 동 사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2페이지입니다.

15번, 임업기계장비 관련입니다.

산림청은 임업인에 대한 임업기계장비 홍보와 정기적인 운용인력 양성교육 등을 통해 임업기계장비의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현장 수요와 활용빈도,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상시 운용인력 현황 등을 반영한 지역별 맞춤형 구입계획을 수립할 것.

16번,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도입입니다.

이것도 문구를 저희가 좀 바꿨는데요. 산림청은 고성능 임업기계장비의 경우 계약에서 도입까지 2년이 소요됨에도 단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일부가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사업기간을 2년으로 조정할 것.

13페이지 17번, 임도시설입니다.

산림청은 향후 임도 계약에 있어서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훼손될 우려가 없도록 수의계약을 지양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14페이지 18번, 임도의 산불 방지 효과 관련입니다.

산림청은 임도 확충·정비 시 산불 확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임도의 산불 방지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할 것.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산림산업정책국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 내용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관련된 내용은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주의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번의 경우 수용하겠습니다, 신청사 관련된.

그리고 9쪽의 10번과 11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의 12번 내용은 주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서 제도개선으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11쪽 13번, 14번 내용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의 15번 내용과 16번 내용은 임업기계장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의 상황과 여러 노력들을 통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3쪽 17번, 저희가 공개경쟁입찰 등의 원칙을 통해서 향후 개선을 약속드릴 수 있어서 시정요구명은 주의로 되어 있는 내용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 임도 관련된 내용은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이병진 위원님.

○**이병진 위원** 임도 비용이 산림청 예산 중에서 한 10%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는 다 산림조합으로 97.3%가 간단 말이지요. 이것 누가 봐도 문제 제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다음 명년도 결산할 때는 이런 얘기가 다시 안 나올 걸로 개린 티 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

○**산림청장 김인호** 그러니까 공개입찰 비율을 완전하게 바꿀 수는 없지만 일단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이병진 위원** 여기 보면 수의계약 87.3%, 산림청 발주 기준 93.4%예요. 이게 다 결국은 산림조합으로 넘어가면서 중국에는 97.8%예요. 100%라는 말이지요. 이것 누가 봐도 문제 있다라고 생각한다, 안 한다?

○**산림청장 김인호** 문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놀음이 아니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냈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명년도에는 없다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수용하는 게 맞다.

○**산림청장 김인호** 저희가 올해 사실은 25%로 수의계약 내용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공개경쟁입찰은 25%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예.

○**소위원장 윤준병**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7페이지 관련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게 감사원 감사 결과 주의 요구를 받았던 사항……

이게 몇 번 주의가 있었지요?

○**산림청장 김인호** 두 번 있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잖아요. 반복적으로 감사에 지적됐다, 개선이 안 됐다, 또다시 청장께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해도 될까요? 청장님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할까요?

○**산림청장 김인호** 이 부분은 기본경비 증액 요청이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연구 과정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편성 과정에 집행의 투명성까지 염두에 두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걸로 해서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예,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7번은 수용이고 8번 제도개선으로 수용한다.

○**문대림 위원** 예.

○**소위원장 윤준병** 어쨌든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은 위법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제도개선이 아니고. 염두에 두고 해 주시고.

○**산림청장 김인호**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9번 수용, 10번 수용, 11번 수용.

12번 제도개선을 요청하셨는데 보조금 연 2회 나눠서 하도록 돼 있는 것은 제도개선이 아니고 현재도 통합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는 점 환기시키니까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 올

라오면 이제 주의 이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명확하게 사전 경고를 합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다음에 13번 수용, 14번 수용, 15번도 제도개선으로 수용, 16번도 제도개선으로 수용, 17번 제도개선으로 수용, 18번 수용.

산림복지국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산림복지국 4건과 18페이지 산림보호국 4건, 이상 8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자체수입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관련해서 산림청은 산림복지진흥원의 자체수입 예산과 실적 간에 과도한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 시설별 운영 환경 등을 고려한 보다 정확한 추산을 통해 자체수입 예산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불필요한 국비의 초과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16페이지입니다.

20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2건입니다.

산림청은 부담금 장기간 미납자에 대하여 불이익처분 등을 적극 고려하고 미수납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관리를 통해 미수납 규모를 줄여 나갈 것, 산림청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미수납과 관련하여 산지 전용 인허가시스템과 징수·정산시스템의 전자적 연계를 강화하여 사전예치·보증·체납경보 등 예방 중심으로 관리하고 체납 단계별 강제징수, 가산금 부과, 재산조회, 분납 관리를 일원화해 재발을 차단할 것, 이상 2건에 대해서 있는데 이것은 하나로 합쳐져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17페이지 21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은 산림청과 기획재정부는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통해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동 자금을 국가재정 내에 편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22번, 일반회계와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과 관련해서는 산림청과 기획재정부는 일반회계 및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간 사업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업 간 차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

18페이지 산림보호국 4건도 마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3번, 집행 가능성 없는 일·숙직비 관련해서 산림청은 국립수목원 기본경비 사업 예산 편성 시 집행 가능성이 없는 일·숙직비 예산을 연례적으로 편성하여 타 사업에 집행하거나 불용하고 있는데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지양할 것.

19페이지 24번, 백두대간 생태축 관련해서 산림청은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백두대간 주민 지원 사업과 관련해 환경부의 유사사업을 고려하여 산림청 사업을 보완할 것.

25번,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관련해서 산림청은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사업에 속해 있는 내역사업의 개수가 과다하고 내역사업 간의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관리의 효율화 및 성과 관리 강화 등을 위해 내역사업을 재분류하여 개별 세부사업으로 편성할 것.

20페이지입니다.

26번, 석포제련소 주변 산림복원 사업 관련해서 산림청은 석포제련소 주변 산림복원

사업 관련 민·관·학 공동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예산집행이 부진한 상황인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동 제련소의 산림 훼손 문제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산림보호단속선 운영 사업의 경우 사업 실적 및 성과가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것.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산림복지국 관련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19번 내용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 20번 내용도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수용하겠습니다.

17쪽 21번 항목의 내용은 수용을 합니다만 녹색자금은 사실 전액 복권수익금으로, 배분액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복권 관련된 녹색자금이라고 하는 게 기재부의 심의를 거치고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도개선 방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주의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기재부와 연결해서 심의한 이후에 이것의 시행 가능성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산림청장 김인호**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산림청장 김인호** 예, 수용합니다만……

○**문대림 위원** 주의로 수용.

○**소위원장 윤준병** 주의로 수용하는데 문구 내용에 이의가 있어요, 시정요구(안)에?

○**산림청장 김인호** 시정요구(안)에 자금을 국가재정 내 편입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은 좀 삭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부합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산림청장 김인호**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주의 내용을 충분히 수용해서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산림청장 김인호** 그리고 22번 내용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그리고 24번, 25번, 18쪽·19쪽 내용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있는 26번 내용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전문위원 황충연**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16페이지 보고드리면서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6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면 ‘산림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미수납과 관련하여 산지전용 인허가시스템과 징수·정산시스템의 전자적 연계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징수·정산시스템이 제가 알기로는 재정정보시스템, 디브레인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것이 인허가시스템하고 연계가 안 된다고 그립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 부분이 좀 어렵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그 위에 있는 부분에서 제도개선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연계가 어려워요?

○산림청장 김인호 예, 이것 하나는 회계시스템이고 하나는 징수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마 디브레인과 산림 전용 통합시스템이 인허가시스템과는 연결이 어려운 걸로 실무진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전산시스템에 연계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연계를 하려고 이렇게 시스템 만들고 다 그럴 텐데 연계가 어렵다는 내용을 내가 모르겠네. 아는 분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산림청산림복지국장 송준호 산림복지국장 송준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각종 정보를, 인허가에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산지 전용 통합정보시스템이 있고요. 지금 말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정산시스템은 기획재정부의 전 부처 회계관리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회계관리시스템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부처의 시스템을 연계·연동하는 것을 기재부라든가 이런 데서는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부담스러워하니까 그걸 개선하라고 지금 의견을 달아 주는 거잖아요. 기재부 입장에서는 옆에 붙는 걸 싫어하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연계하면 예방까지도 가능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수납을 독려할 수 있는 기능이 된다면 그걸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

○산림청산림복지국장 송준호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재정 당국하고 한번 협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제도개선을 수용한다고 청장님 말씀하시기는 하셨네요.

○산림청장 김인호 예, 맞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때는 그런 검토를 하셨던 것 같은데 왜 전문위원이 발언을 하니까 의견을 달리하시는 거예요?

○산림청기획조정관 이종수 말씀을 잠깐.....

○송옥주 위원 예.

○산림청기획조정관 이종수 기획조정관 이종수입니다.

디브레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이고요. 이 산지 전용 인허가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는 것들은 개인들이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부 납부시스템에다가 개인이 납부하는 것들을 붙이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 내용의 취지는 개인이 납부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산지전용 인허가 할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납부할 때 징수·정산시스템의 체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점검해서 연계해서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사전예치나 보증·체납경보 시스템을, 미납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달라는 거니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야 당연히 개인이 납부하지요,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인허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은 산지전용 인허가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디브레인은 별도 있고, 그 내용을 연계하면 미납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 연계해 가지고 사전에 체납되지 않도록 예방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이 부분은 여기서 확연히 잘 모르니까, 지금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의무를 부과하기에 좀 부담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여기에서 제도개선 대상으로 명기하는 것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렇게 합시다.

18번 수용했고요 19번 수용했고.

20번은 위쪽의 ‘부담금 장기간 미납자에 대해서 불이익처분 등을 적극 고려하고 미수납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관리를 통해 미수납 규모를 줄여 나갈 것’이 내용은 수용을 하고 대신에 밑에 있는 제도개선 사항은 별도 보고를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번은 시정요구(안)을 좀 조정해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해서 편입하는 내용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용을 하고요.

22번 수용, 23번 수용, 24번 수용, 25번 수용, 26번 수용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재난통제관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끝으로 산림재난통제관실 1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관련입니다.

산림청은 산불진화 업무의 중요성 및 생명과 관련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대형산불 발생 시 진화인력 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 운용의 효과성 등을 고려할 때 산불재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산불재난특수진화대로 통합 운영하는 등 산불대응 지휘체계의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할 것.

22페이지입니다.

28번, 고정익항공기 관련입니다.

산림청은 군 당국과 적극 협의하여 고정익항공기 물탱크 도입 사업비가 2025년도에는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그 아래 29번,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처우 관련해서 산림청은 향후 초대형산불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례적 지적사항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열악한 처우를 신속하게 개선할 것.

23페이지 30번, 노후 산불감시카메라 관련입니다.

산림청은 초대형산불 등 산림재난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후 산불감시카메라를 신속하게 교체하고 추가적으로 설치할 것.

31번, 산림재해드론 활용 사업 관련입니다.

산림청은 산림재해드론 활용 사업의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지 못하여 동 사업의 2024년도 미집행액이 과다하게 나타났으므로 주의할 것.

24페이지 32번, 산불위험지 관리 사업 관련해서 산림청은 산불위험지 관리 사업은 농

총진홍청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과 유사하고 산림인접 영농지 구분이 모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력과 장비 운영 및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 부처 간 사업 일원화 추진을 검토하고 산불예방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을 독려할 것.

25페이지 33번, 산림청은 산림헬기 도입에 착수부터 납품까지 3년 이상이 소요됨에도 산림헬기 도입·교체 사업의 사업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3차 연도 예산의 일부가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사업기간을 4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34번, 산림헬기 도입·교체 사업 관련입니다.

산림청은 산불의 신속한 진화 및 초동 대응을 위한 산림헬기 도입·교체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예산을 타 사업으로 전용하는 집행방식을 가급적 최소화할 것.

26페이지입니다.

국산헬기 도입 관련해서 산림청은 국산헬기 도입·교체, 외주정비 및 항공보험 예산의 타 사업 또는 타 목적으로 과다한 이·전용이나 세목 변경은 산불방지대책 마련 및 준비가 미흡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국산헬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헬기운영 기반을 마련할 것.

마지막으로 36번, 산불대응체계 통합입니다.

산림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행 예정인 산림재난방지법의 지휘체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작동하도록 산불 규모별 지휘전환 기준, 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표준, 관계기관 역할분담을 정비한 새로운 통합지휘 표준안을 마련할 것.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산림재난통제관실 관련된 시정요구명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의 27번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내용은 고정익항공기 물탱크 도입과 관련된 연내 착수 필요에 대한 시정요구입니다. 지금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도개선으로 해 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형산불에 군 수송기 적극 활용을 산림청과 국방부 간에 최근 2025년 7월 협의를 했습니다, 대형산불 관련해서 긴급한 협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탱크 제작과 도입기간을 고려해서 내후년 2027년 6월부터는 시범 운영하기로 협의하였기 때문에 주의 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초대형산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9번 수용하겠습니다. 30번과 31번 수용하겠습니다. 32번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 33번, 34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26쪽의 35번, 36번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고정익항공기에 물탱크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산림청장 김인호** 가능합니다.

○문대림 위원 확신합니까?

○산림청장 김인호 지금 제작·도입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관련 전문가들은 얼토당토않은 접근이다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봐 보시고요.

○산림청장 김인호 예.

○문대림 위원 그리고 국산헬기와 관련해서 국산헬기가 산불진화 작업에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산을 장려해야 되겠고 국산을 키워야 되겠는데 산불진화 작업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지? 가장 경쟁력이 있는 나라의 헬기가 어떤 거예요, 산불진화와 관련해서?

○산림청기획조정관 이종수 기획조정관입니다.

수리온 국산헬기가 당초 담수량이 2000ℓ 였다가 협의를 거치면서 현재는 2500ℓ 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산림청이 29대를 갖고 있는 제일 많은 주력 기종인 카모프가 3000ℓ 이기 때문에 물량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난다. 그리고 군용헬기이기 때문에 기동성이 있어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갔을 때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뿌리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초대형 헬기는 미국 에릭슨사의 S-64라는 헬기가 있습니다. 8000ℓ 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급으로 해서 8000ℓ 이상 되는 것들을 저희가 도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도입은 에릭슨사나 콜롬비아사나 미국에 있는 회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실질적으로 산불 초기 진화를 하려면 그 정도 규모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산림청기획조정관 이종수 예.

○문대림 위원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산림청기획조정관 이종수 러시아 헬기는 3000ℓ 카모프가 있는데요. 그건 아시다시피 저희가 부품 수급이 제한돼 갖고요.

○문대림 위원 부품?

○산림청기획조정관 이종수 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부품 문제는 해결해 주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산림청기획조정관 이종수 그건 차관으로 하는 문제라든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에서 받아 올 차관이 있잖아요.

○산림청기획조정관 이종수 예, 그것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문대림 위원 한 2800억 정도인가요?

○산림청기획조정관 이종수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 봄야 되는데 현재 논의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문대림 위원 대신에 헬기로 가져오는 부분.

○산림청기획조정관 이종수 헬기 부품으로……

○문대림 위원 그리고 제가 요즘 북극항로에 꽂혀서 하다 보니까 앞으로 북극항로와 관련해서 미국과 러시아와 한국이 손에 손을 잡고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정부에서도 산림청 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차관으로 우리가 준 돈이 있으니까 대신 그걸 갖고 오고, 부품이라든가 고장 수리 등을 담보받을 수만 있다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산림청장 김인호**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송옥주 위원님.

○**송옥주 위원** 29번의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쳐우개선 관련된 부분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제도개선을 수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쳐우개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위험수당과 관련된 부분을 인상한 부분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네요, 지적사항에. 그러면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데 이 위험수당을 산림청 직원들의 재난업무수당 수준으로 상향하는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되거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산림청장 김인호** 지금 현재는 4만 원으로 추가를 했고요. 다만 가족수당을 추가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는데 저희가 추경으로 확대된 인원으로 보면 495명인데 그분들에게 가족수당을 지불하게 되면 2억 4000만 원 정도의 추가 경비가 소요되는데 그 부분은 기재부랑 얘기해서 확대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해마다 20억 원씩 불용이 되고 3년간 60억 원이 불용된다고 그러면 그게 가족수당을 해서 2억 정도가 상향되는 부분들이 이분들의 쳐우가 제대로 개선되고, 앞으로 산불 피해가 더 극심할 수 있는 그런 게 예상되는 부분들인데 제대로 제도개선이 되는지를 모르겠고요.

또 한 가지는 27번에 이 부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산불재난특수진화대로 통합 운영한다고 하는데 현재의 시스템상이나 여러 가지 운영체계상 통합 운영이 제대로 될 건지, 제도개선에 대한 실행력이라든지 담보력이 제대로 될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그것도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청장 김인호** 지금 산림재난, 특히 산불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 간에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지금 재난대응 인력에 대한 통합들 그리고 대응에 대한 전문성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저희가 산불과 관련해서는 인력으로 보면 크게 세 분야가 있습니다.

공중진화대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에 해당하는 공무직, 그분들은 기간제로 일부 있습니다만 좀 전에 얘기했던 가족수당이나 위험수당을 늘려서 쳐우개선을 하겠다는 정말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사실 그분들은 기간제로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일을 하는 분들이지 정기적으로 저희와 함께 일을 하는 분들은 아니고. 좀 고령화되어 있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전문성도 높여서 산불 대응을 위한 초동 진화뿐만 아니라 잔불 처리 등등의 산불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으로 이분들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고민을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관계 부처와 함께 협력해서 지금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병진 위원님.

○**이병진 위원** 헬기 있잖아요, 산불진압헬기. 우리가 전투기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내연자동차는 세계 3위에 랭킹이 되어 있어요.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협력해서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일부분 또 생산하면서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포니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 국민들이 한국 자동차를 쓴으로 인해서 자동차산업이 융성하는 기초가 마련됐습니다.

92년 8월 24일 중국과 수교해서 제가 93년도에 유학을 갔는데 중국 전역에 중국이 만든 내연자동차 1대가 없었습니다. 내연자동차의 부품이 한 2만 개 정도 들어간답니다. 중국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들이 결국은 전동차, 전기차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1대도 수출하지 않아요. 중국 내수와 브라질, 유럽, 동남아시아, 태국과 브라질이 최대 수출 시장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우리 헬기도 전투헬기도 만들고 그다음에 수리온이 물을 담고 가는 톤 양이 적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하고 쓰지 않으면 우리 헬기산업이 또 시장이 없는 겁니다. 러시아 헬기를 차관으로 우리가 받아와서 적시에 부품이 공급 안 돼서 제 기억에 헬기장에 앉아 있는 헬기가 적지 않게 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우리 헬기는 부품이 필요할 경우에 적시에 제공이 될 겁니다. 더 많은 것을, 더 가용성이 뛰어난 우리 헬기를 동원해서, 물론 조종사 문제가 있겠지만 톤수가 적으면 회차를 늘려서, 우리 헬기산업도 발전시키고 그걸 기반으로 한국이 산불이 많이 났는데 이런 기능이 발휘됐기 때문에 해외 수출에 더욱더 비교우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물론 고려해야 되겠지만 방점을 우리 헬기를 더 운용하는 쪽으로 산림청뿐만 아니고 정부기관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정부에서 안 하면 누가 그걸 사서 그 시장을 확대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산불에 최적화된 헬기가 초기 진화에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27번 수용, 28번은 협의가 다 끝났다는 거지요?

○산림청장 김인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언제부터 이게 들어간다고요?

○산림청장 김인호 27년 2월에 시범 운영하기로 협의를 했고요. 저희 국방부와의 협의는 올 7월 달에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하여튼 이 부분은 협의가 됐고 2027년부터 시범 운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산불진화에 관련된 헬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나 또 산불 대책의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예산 추진이 제대로 안 되거나 불용이 됐다는 점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라는 점을 환기시키니까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예,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29번 수용, 30번 수용, 31번 수용, 32번 수용, 33번 수용, 34번 수용, 35번·36번 모두 수용.

이것으로 산림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항목별 심사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림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요구사항에 관련된 자구 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님 또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고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께서는 해양수산부차관 및 관계 직원들이 착석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먼저 공통사항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입니다.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해양수산 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은 다수의 취약점이 존재하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안)은 해양수산부는 각 시설별 취약점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취약점을 조속히 해소하고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번입니다.

본부인건비 등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는 연례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부 인원은 정원보다 현원을 더 많이 배치하고 소속기관은 상시적인 결원을 초래하는 등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안)에서는 소속기관의 현원 부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신규 채용된 직원들의 자발적인 퇴직을 최소화하고 이들을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3번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을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안)은 평택항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위상 강화에 대해 고려할 것입니다.

4번입니다.

2024년 신규로 추진된 7개 세부사업의 13개 내역사업에서 전혀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안)은 신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편성 단계부터 타당성 있는 사업을 반영하고 조속한 사전 절차 이행 등을 통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5번은 보조금 사업의 실집행률 저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은 73.6%로 저조하고 민간보조사업의 경우에도 4개의 사업에서 실집행률이 5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시정요구(안)은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속한 사전 절차 이행 등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6번입니다.

2024회계연도 실집행률 50% 미만 사업에 대해서 실집행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안)은 철저한 집행 점검과 실집행률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7번은 변상금 징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안)은 변상금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소멸시효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8번입니다.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 조사 및 관리 등 19개 사업에 대한 시험연구비가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경비를 시험연구비로 집행하고 비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되는 사례 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안)은 사업별로 필요한 비목에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시에는 시험연구비의 목적에 부합하는 항목에만 집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9번은 농특회계 관련해서 세입예산은 연례적으로 과소 계상되고 있고 또한 미수납액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안)은 해양수산부는 향후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미수납액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 공통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해양수산부차관입니다.

일단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공통 분야 9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들 위원님들 지적사항 모두 수용합니다.

건별로 말씀을 올리면, 1번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주신 말씀 감안하여 저희들 제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력 운용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사항에 대해서 이병진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들이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적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사업도 윤준병 소위 위원장님 등 지적하신 사항들 저희들이 유념해서 실집행률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도 저희들 실집행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사항도 윤준병 소위 위원장님 말씀 주신 사항 유념해서 제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지적하신 사항들 저희들이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도 위원님 주신 의견 감안하여 저희들 제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병진 위원님.

○이병진 위원 저는 뭐 이번에는 된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기우에서 한 말씀 드리면 어제 장관님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3번.

전국에 31개 국가 관리 항만이 있고 평택항이 물동량 기준 5위에 포지셔닝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는 해양수산청이 아니다. 내용과 형식을 통일해야 실체가 되듯이 내용도 담고 형식도 담는 직급에 맞는 분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강화에 대해 고려할 것’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약조를 하셨고 저 또한 여기에 매진하는 것이 올해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 차이는 없겠지만 더욱 더 책임성을 갖고 해 주시면 어떻겠냐라는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위원님 말씀 저희들 공감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부처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1번 수용했고요.

그다음에 2번과 관련된 내용은 해수부가 좀 반성을 더 심각하게 해야 된다.

단순히 제도개선이 아니고 연례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계속 부족하고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한 번은 끊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저희들 문제의 중요성을……

○소위원장 윤준병 끊으려고 그러면 잘못됐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주지를 시켜야 끊어지는 것 아니에요? 계속 이미 하고 있는 내용 다 알고 있으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 내용이, 주의나 시정을 한번 받아야 끊어집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저희들 이 사안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고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이 상황을 시정·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내년에 올라오면 이것은 시정으로……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잘 관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다음에 3번은 ‘위상을 강화할 것’ 여기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상을 강화할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4번 동의, 5번 동의, 6번 동의, 7번 수용, 8번 수용, 9번 수용.

해양정책관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해양정책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선부역사교육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불용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안)은 법적 집행 가능성이 없음에도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입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 해양박물관 및 해양과학관 지원 출연사업에서 과다한 인건비 이월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시정요구(안)은 출연금에 관련해서 적정 금액만 편성 및 배정하는 등 출연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12번입니다.

12번은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조성사업의 지원에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안)은 각 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건립사업이 마무리되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13번입니다.

13번은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사업 관리 미흡에 관한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안)은 해당 시설에 관련해서 설계·감리비 산정의 정밀성을 확보하고 공사비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14번입니다.

14번은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사업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게 재이월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는 사항이었고 시정요구(안)은 국고보조금 재이월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입니다.

15번입니다.

15번은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의 예산 실집행률 저조 등의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안)은 동 사업이 추가적인 자연 없이 2029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면밀히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10번은 문대림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저희들이 감안하여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11번 사항도 지적된 사항들 저희들이 감안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12번 사항도 문대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적해 주신 취지를 반영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13번 의견도 지적된 사항들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공사비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에 대해서도 지적된 사항들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향후에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쇄빙선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2029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의 조치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번·11번 수용이고요. 12번·13번 수용, 14번 수용.

15번 관련해서 수용 좋은데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은 북극항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꽤 중요하게 다뤄야 될 사업임이 틀림없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전처럼 만들어 놓고 실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으면 더 앞당겨야 된다. 특히 시범운항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마당이니만큼 그 부분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해양환경정책관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해양환경정책관실 설명드리겠습니다.

16번입니다.

해양경계 획정관리 사업에서 근거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의 문제점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안)은 향후 다른 연구용역 사업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신규 사업 추진 시에는 철저한 추진계획의 검토 이후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다.

17번입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이 예산 불용이 반복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시정요구(안)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이 3년간 예산이 반영되었지만 모두 불용되고 여러 차례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결국 타당성 재조사에 통과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경북 호미반도와 전남 여자만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겪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18번입니다.

해양환경측정망 구축·운영사업 관련해서 해양방사능 진급조사 관련 사항을 해양환경측정망 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안)은 체계적인 해양방사성물질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해양방사능 진급조사도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에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19번입니다.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 완료 후 준설 등을 통해 운영비를 자체 충당한다는 당초의 계획과 달리 매년 국고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에 관련해서 시정요구(안)은 다목적 대형방제선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

20번입니다.

침몰선박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잔존유 확인 없이 잔존유 회수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등을 편성하고 있어서 예산과 집행이 분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안)은 위해 저감조치 대상 선박에 대한 잔존유 확인을 우선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잔존유 회수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예산도 적정 규모로 편성하도록 사업 방식을 개편할 것입니다.

21번입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관련해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단가를 부풀리거나 중복 청구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시정요구(안)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의 단가 부풀리기 및 중복 청구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22번입니다.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인허가 절차 지연, 설계 변경에 따른 절차 순연 등으로 연례적 이월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안)은 향후 사업지부터는 지역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목표한 2027년까지는 모든 사업지가 준공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23번입니다.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사업이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시정요구(안)은 향후 센터 건축공사 추진 시에는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16번에 관하여 송옥주 위원님 등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17번 사안에 대해서도 문대림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도개선을 저희들이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18번 사안에 대해서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에 포함되도록 제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19번도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효율적인 활용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20번도 이만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사업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21번도 문금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사항도 문대림 위원님, 문금주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2027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23번 사항도 저희들이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제도개선사항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번 수용, 17번 수용, 18번 수용, 19번 수용, 20번 수용, 21번 수용, 22번 수용, 23번 수용.

국제협력정책관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실시하고 있는 해양조사정보업 기술용역의 평가위원 관련해서 규정이 미비하고 그다음 내부 평가위원의 개입 여지가 다소 클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는 기술평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여 부적절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25번입니다.

베트남 수산양식업 협력 사업과 인도네시아 양식생산성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와 관련해서 시정요구(안)은 해양수산부는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용품 구입비 등을 시험연구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하고 반복적으로 시험연구비에서 집행되고 있는 항목은 적절한 비목에 직접 편성하여 집행하는 방식으로 시정할 것입니다.

26번입니다.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관련하여 시정요구(안)은 국제기구와의 사전 협의를 강화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가나 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역량 강화사업은 연내 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주세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24번은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해양조사정보업 기술용역의 평가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부적절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주의 수용합니다.

그다음 25번입니다.

이 건도 지적하신 사항들을 수용해서 시험연구비가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수용하겠습니다.

26번 사항은 이만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번 주의, 25번 시정, 27번 제도개선.

이어서 수산정책관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27번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승인한 금액을 보조사업자인 수협이 초과하여 재이월하는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안)은 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 재이월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28번입니다.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가 2014~2024년 플라스틱 어상자 721만 개를 보급하였지만 74만 개가 유실된 결로 파악됐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시정요구(안)은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 성과목표를 전년 전체 어상자량에서 당해 보급량을 합산한 비율로 조정하고 플라스틱 어상자 전면교체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29번입니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1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시정요구(안)은 향후 시공업체 설계 보완 등의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목표한 대로 올해 안에 착공함으로써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입니다.

30번입니다.

저온·친환경 위판장 내역사업은 2023년도에는 전액 미집행 이월, 2024년에는 실집행이 16.2%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안)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하고 사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보조금 법령에 부합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31번입니다.

수산물이력제는 사업의 효과성이 저조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안)은 수산물이력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예산 지원 확대와 함께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32번입니다.

농특회계의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사업 중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의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부정환급 등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시정요구(안)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33번입니다.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은 대상자의 연령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안)은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의 수검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34번입니다.

양식어업 재해보험 관련해서 매년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어가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보험제도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안)은 양식어민들의 고수온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보장 품목을 확대하고 고·저수온 특약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35번입니다.

경영이양직불 사업은 사업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안)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36번입니다.

소규모어가·어선원직불제의 경우 요건 미충족으로 탈락하는 어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소규모어가·어선원직불제 대상 인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급요건 또는 적정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37번입니다.

수산장비 구입지원(융자) 사업에 관련해서는 연례적으로 사업 집행이 부진하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안)은 사업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한편 전 사업 과정에 걸쳐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27번 국고보조금 재이월과 관련하여 이만희 위원님 지적사항 수용하여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번입니다.

서삼석 위원님의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여 성과 목표를 조정하고 플라스틱 어상자로 전면 교체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번입니다.

문대림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제도개선 지적사항 수용하여 부산공동어 시장 현대화 사업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번입니다.

보조금법령 취지에 부합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문대림 위원님께서 제도개선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수용하여 제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이 사항은 문금주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이병진 위원님, 모든 소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지적해 주신 취지를 반영해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32번도 소위 위원님들 또 이만희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까지 여러 분께서 제도개선 요구하셨습니다. 제도를 수용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번입니다.

이 사안도 문금주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윤준병 소위 위원장님, 이병진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등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 저희들 염중하게 받아들이고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이 실적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34번도 어기구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제도개선 사항 수용해서 저희들이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5번입니다.

이 사안도 문금주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이병진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경영이양직불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36번은 서천호 위원님께서는 주의를 요구하셨고 문금주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이병진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은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안은 문금주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대로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7번입니다.

용자 사업에 대한 집행률 제고방안에 대해서 문대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반영해서 제도개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병진 위원님.

○**이병진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지적, 농림부 결산할 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

농림부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수검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는 수검을 실시해서 수검률을 제고시키겠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여기 보면 예산집행률도 61.1%, 실집행률은 37.9%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 명년도에는 다시 이게 제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산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그래서 병원도 좀 확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검진 버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이병진 위원** 제가 보니까 해양수산부가 지금 60개인데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거는 아는데, 계획은 잡는데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집중해서 실질적인 불용 예산이 나오지도 않게 하고, 아주 그냥 깨끗한 해양수산부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특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예.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없으시면 27번 시정, 28번 제도개선, 29번 제도개선, 30번 제도개선, 31번 제도개선, 32번 제도개선, 33번 제도개선, 34번 제도개선, 35번 제도개선, 36번 제도개선, 37번 제도개선.

다음은 어업자원정책관실 이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38번입니다.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 세 척에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법원의 공사중지명령 이후 공정이 장기간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안)은 국가어업지도선 건조사업에서 사업이 지연되어 임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39번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과 관련해서 이거에 대한 효과가 가시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안)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저선령 어선의 감척을 최소화하고 감척한 저선령 어선은 재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

40번입니다.

어선거래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어선거래시스템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대림 위원님께서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시스템 운영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 해서 유형은 주의입니다. 그리고 문금주 위원님 등께서는 해양수산부는 어선중개업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말씀하셨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1번입니다.

어업용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등과 관련해서 사업지급 기준을 현실화시키지 못한 채 사업을 진행하여 전액 예산을 불용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안)은 향후 유사한 가격연동 보조사업이 편성될 경우 편성사유 및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기준을 현실화할 것입니다.

42번입니다.

어구보증금제 운영과 관련해서 반납장소 부족으로 인한 운영 미흡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시정요구(안)으로 폐어구 회수처리 예산의 실집행률을 제고하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고 사용어구에 대한 반납장소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38번입니다.

국가어업지도선 건조와 관련해서 시정 요구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제도개선을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시정요구(안)의 취지가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그동안 책임자를 문책하고 있고요. 또 사업을 자연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이미 저희들이 착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다음 39번입니다.

문금주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수용해서 제도개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번입니다.

문대림 위원님 등 세 분은 주의를 요구하셨고 송옥주 위원님 등 네 분은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마 취지가 어선중개업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근본적인 그런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 41번입니다.

임호선 위원님 지적사항 수용해서 집행기준을 현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수용합니다.

42번은 김선교 위원님, 문금주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도개선 사항 저희들이 수용해서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반납장소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님.

○**이병진 위원** 어업지도선 말이지요, 지금 공정률이 50.8%, 63%, 53% 그다음 35%인데 이제는 이상 없이 마무리가 된다면 언제 끝납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동안 이게 소송이 걸리고 해서 중단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소송 문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저희들이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본

예산에 담는 것으로 지금 거의 마무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이병진 위원** 언제 끝날 예정이에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본격적으로 다시 재개를 하면 한 27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27년에는 완성이 돼서……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이제는 지도선 역할을 다 합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38번 어업지도선, 공사 재개가 가능한 수준은 돼 있는 거예요? 거기 부실도라든지 이런 건 다 점검했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거는 그거대로 지금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고요.

○**소위원장 윤준병**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이제 내년도 예산이 약 한 4개월 후에 집행이 되니까 그사이에 모든 걸 점검하고 책임소재 확실히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과거에 시정조치도 하고 징계도 먹고 이렇게 한 내용이어서 더 세게 처분을 해 줘야 좀 작동이 될 건데……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말씀 주신 사항들 다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제도 개선으로 좀 정리를……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그러니까 공사 재개를 서두르려면 사전에 공사 재개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명확하게 결론을 내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안 끝났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지금 그 점검을 하고 있고요, 연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하여튼 금년에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은 한번 좀 정리해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38번 제도개선, 39번 제도개선, 40번도 제도개선, 41번 제도개선, 42번 제도개선.

어촌양식정책관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43번입니다.

김 양식 신규 면허구역 대폭 확대에 따른 물김 가격 폭락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안)으로 향후 양식장 신규 면허 시 양식장 면적을 적절히 조절하는 한편 마른김 가공역량 확충 등 김 가격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44번입니다.

수산물 안심 확보 지원사업에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내용을 확대·변경

하고 그다음에 지정확인서 발급 관련 경비보다 홍보 및 소비촉진 관련 경비를 더 많이 집행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안)은 수산물 안심 확보 지원사업과 관련해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45번입니다.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에 관련해서 일부 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시정요구(안)은 해당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동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46번입니다.

유류저수지 지원화사업 그리고 충남 당진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사업, 전북 김제 내수면창업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등이 예산이 불용되거나 전액 이월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시정요구(안)은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예산 이월이 발생한 사업지에서 추가적인 사업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면밀히 할 것입니다.

47번입니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시정요구(안)은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의 실집행률 부진이 사업기간 연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 및 예산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윤준병 위원님께서 시정 그리고 문금주 위원님 등께서는 제도개선을 시정요구 유형으로 제시하셨습니다.

48번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사업지의 공정률이 저조하여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안)은 어촌뉴딜300 사업의 공정 및 예산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표한 시기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윤준병 위원님께서는 시정 그리고 문금주 위원님 등께서는 제도개선을 유형으로 제시하셨습니다.

49번입니다.

양식장 임대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안)은 임차인의 수요에 부합하는 임대 양식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다른 귀어·귀촌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임차인의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50번입니다.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한시지원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50%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시정요구(안)은 해양수산부는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집행 부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개별 어가의 실제 전력사용량에 비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체계를 강구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43번, 김 가격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적사항 수용해서 제도개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44번은 이만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수용해서 제도개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45번은 문금주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이병진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말씀 주신 사항 수용해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번, 내수면 자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문대림 위원님, 이병진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수용해서 제도개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47번, 어촌신활력 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소위 위원장님께서는 시정을,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제도개선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사업 추진 방식과 제도를 그렇게 개선하라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 48번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과 관련해서 소위 위원장님께서는 시정을, 나머지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제도개선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사업으로서요 마지막까지 공정 관리를 잘하고 또 예산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점 감안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 49번입니다.

문대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수용해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50번입니다.

문대림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등이 양식장 전기료 관련해서 수요 예측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 말씀 주신 사항 수용해서 제도개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3번 제도개선, 44번 제도개선, 45번 제도개선, 46번 제도개선.

47번, 48번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내용은, 해수부에서 어촌개발 사업을 하는데 중요 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맞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중요 사업인데, 중요 사업인 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실제 수요도 많은 사업인데 그만큼 없어치 할 수 있도록 공정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아마 작년에 국감 때도 그렇고 이 내용 수차례 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국정과제 논의할 때도 이 내용을 고민했었던 과정이 있는데 이후 사업들도 연장이 돼야 될 거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래서 어촌뉴딜3.0 사업 이렇게 작명했던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작명을 특별히 바꾸지는 않았고요.

○**소위원장 윤준병** 신활력 그걸로 그대로 하는 걸로……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하는 건데 세부 유형만 조금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래서 그것 개선해서 하되 내용이 이재명 정부하에서도 어촌의 공간 재편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점검하고, 과거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정리해 가면서 적기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니까 그렇게 제대로 해 주길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소위원장 윤준병** 47번 제도개선, 48번 제도개선, 49번 제도개선, 50번 제도개선.

해운물류국 이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해운물류국 보고드리겠습니다.

51번입니다.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강화사업과 관련해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가 수행한 보조사업에서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고, 시정요구(안)으로는 해양수산부는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부적절한 집행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고 보조금이 비목별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여 보조금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52번입니다.

무역항 안티드론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집행률이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안)은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항후 신규 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준비 및 검토 등을 충분히 선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금주 위원님 등은 주의 그리고 송옥주 위원님 등은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유형을 제시하셨습니다.

53번입니다.

항만보안시설·장비 유지보수사업 중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예산의 전용 그리고 그 전용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시정요구(안)은 연내 집행이 곤란한 예산을 전용하고 전용 예산 대부분을 이월하는 예산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주요 항목에 대해 연간 단위의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51번은 이만희 위원님 지적사항 수용하여 제도개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번은 일부 위원님은 주의를, 일부 위원님은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할 때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로 시정요구 사항이 이해가 됩니다. 사실 기존에는 1차 연도에 설계비와 공사비 일부를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에 조금 차질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해서 1차 연도에는 설계비만

반영하고 2차에 공사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53번은 지적사항 수용해서 저희들이 연간 단위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이병진 위원님.

○**이병진 위원** 안티드론시스템 이게 제가 상임위원회 할 때도, 평택항 바로 옆에 2함대 사령부가 있고 그다음에 강 건너 한미연합사령부가 있어요. CCTV하고 안티드론시스템을 평택항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 이게 효용성이 없다라고 감히 말씀 올리기는 어렵지만 울산항 이런 쪽, 울산항을 절대 그러는 건 아닌데 계획을 좀 촘촘하게 세웠겠지만서도 평택·당진항을 세워서 여기도 안티드론시스템하고 CCTV 보완을 빨리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저희들 그 안티드론시스템 추가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노력이 아니라 해야 된다니까요. 왜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제가 상임위원회 할 때 누차 지적했던 사항인데……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금년에 예산이 반영돼 있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아, 그래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잘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1번 제도개선, 52번도 제도개선, 53번 주의.

해사안전국, 항만국까지 일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4번입니다.

CBM+ 기반기술 적용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서 시정요구(안)으로 향후 다부처 사업 추진 시 부처 간 협의를 보다 면밀히 진행하는 등 관계 부처의 예산 확보 여부 및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 조정과 협의를 거칠 것이라는 시정요구(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문대림 위원님 등은 제도개선 그리고 서천호 위원님은 주의 그리고 이병진 위원님 등은 부대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55번입니다.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양사고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고원인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에 취약한 분야를 집중관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임미애 위원님 제도개선 그리고 이병진 위원님 등은 부대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항만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6번입니다.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 관련해서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민간 제안 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해 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 등이 있었고 이에 관련해서 시정 요구(안)으로 민간투자 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해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57번입니다.

포항영일만신항 소형선부두 축조사업은 기본조사설계비가 편성되지 않아서 실시설계비에서 1억 2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안)으로 해양수산부는 비목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기본조사설계비 미편성 후 전용 집행 등 예산집행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58번입니다.

포항영일만신항(1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남방파제 2단계 사업은 설계보상비 지급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를 편성하지 않아서 공사비에서 30억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시정요구(안)으로는 해양수산부는 비목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과 예산안 편성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여 기본조사설계비 미편성 후 전용 집행 등 예산집행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59번입니다.

부산항 사업과 관련해서 북항 파제제 사업과 연구조사선 부두 사업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로 예산액이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시정요구(안)은 국회 의결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을 위해 계획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사전 검토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철저한 사업 관리와 사전 행정절차를 준비할 것입니다.

60번입니다.

묘도 재개발 용수 및 배수시설 사업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은 4년 가까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본공사 준공 이전에 정부재정 사업의 완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안)은 묘도 재개발 본공사 준공 이전에 정부재정 사업인 묘도 재개발 용수 및 배수시설 사업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을 완료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55번입니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주문하셨는데요. 임미애 위원님 제도개선 요구 수용해서 저희들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번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54번은?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죄송합니다. 54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R&D 사업 관련해서 다부처 사업의 경우에 부처 간 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신데요.

문대림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고 서천호 위원님이 주의를 요구하셨는데 저희 부처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방위사업청에서 예산을

확보 못 하는 바람에 무산된 사업으로서 앞으로는 다부처 사업의 경우에는 집행과정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도록 관련 부처 공동 지침 개선을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55번입니다.

해양사고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임미애 위원님 제도개선 요구 수용해서 사고예방 대책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번입니다.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 사업과 관련해서 문금주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등 지적하신 사항들 수용해서 제도개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57번 포항영일만신항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 수용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수용합니다.

58번 사업도 포항영일만신항의 남방파제 사업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9번 부산항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적사항 수용해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번 사항과 관련해서는 문금주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등 지적하셨는데 제도개선 사항 수용하고요. 이 사업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개발 사업 본 공사 전에 정부재정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54번 제도개선 수용, 55번 제도개선 수용, 56번 제도개선 수용.

57번, 58번, 59번,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들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징계 먹여야 될 것 같은데?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직원들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소위원장 윤준병** 그런 걸 징계 먹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주의 수용을 하는데 징계에 벼금가는 경각심을 가지고 사업 관리를 잘해야 된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

○**소위원장 윤준병** 차관께서 그 내용을 꼭 염두에 두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60번 제도개선 수용.

다음은 부대의견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부대의견입니다.

1번은 서천호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으로 해양수산부는 삼천포수협위판장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판장 현대화 시설 설비 구비를 위한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합니다입니다.

2번도 서천호 위원님께서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의 지자체 수거 비용을 국가가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폐기물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노력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3번은 이병진 위원님께서 김 가격 안정을 위한 마른김 가공 역량 확충을 위해 노력합니다입니다.

4번은 임미애 위원님 등께서 말씀하신 여수옹천 마리나 사업 및 안산 방아머리 사업은 향후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주의합니다입니다.

5번은 문금주 위원님께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시 지역 내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적극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합니다입니다.

6번은 김선교 위원님께서 폐어구 집하장 확보 및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합니다입니다.

7번은 문금주 위원님께서 2026년에 발표될 제2차 갯벌 등 관리 및 복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중장기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합니다입니다.

8번은 문금주 위원님께서 현행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지원금 산정방안을 개선합니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1번 사항 저희들 수용하고요.

다음 2번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수용하는데요. 다만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일부 부처에서 지자체 지원 근거에 대해서 현재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나중에 법안심사 과정에서 별도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번 수용합니다.

4번도 수용합니다. 다만 끝에 표현이 ‘주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부대의견과 표현상의 일관성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끝에 ‘주의한다’를 ‘노력한다’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5번 사항 수용합니다.

6번도 수용하고요.

7번, 8번 저희들 부대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은 4번 ‘주의한다’를 ‘노력한다’로만 바꾸고 나머지는 다 수용하시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것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항목별 심사

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의 자구 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해양경찰청장 및 관계 직원들이 착석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해양경찰청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요구사항 13건을 제시하셨고 부대의견 1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8건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해경에서 수용을 했고 4건의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시정·주의·제도개선을 요구하셨는데 제도개선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건의 경우에는 시정이 아닌 부대의견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열세 가지 다 한꺼번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해양경찰청은 연구용역비 편성 단계에서 과제의 성격과 정책 연계성을 검토하여 일반연구와 정책연구를 명확히 구분하고 일반연구 과제 연구자 선정의 투명성과 성과 공개를 강화할 것.

2페이지입니다.

반복적인 인건비 이·전용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은 예산편성 당국과 협의하여 계급별 협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할 것.

3번, 연가보상비 지급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은 연가보상비를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고 집행 과정에서 미지급이나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며 연가보상비의 지급한도와 지급일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3페이지 4번, 공공요금 및 제세와 관련해서 해양경찰청은 지방관서기본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여 이·전용을 최소화할 것.

4페이지입니다.

드론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은 드론 관련 직무교육 이수자를 드론 운영 직무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무인기의 임무별 표준운용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현

장 대응의 일관성과 활용도를 제고할 것.

6번, 불법 외국선박 나포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은 불법 외국선박의 위반 유형과 나포 환경을 나포포상금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포상금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5페이지, 7번입니다.

불용예상액의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은 향후 장비 도입 과정에서 불용액 을 활용하는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8번, 외자장비 도입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은 외자장비 도입 시 사업의 특수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집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월·불용을 방지할 것.

6페이지입니다.

9번, 연안안전지킴이 사업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은 연안사고 특성과 치안 수요를 고려하여 지킴이 근무시간을 확대하고 배치 장소를 단계적으로 늘려 제도의 내실화와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것.

7페이지입니다.

마약범죄수사자문위원회와 관련해서 해양경찰청은 해양 마약범죄수사자문위원회가 본래 취지대로 해양 마약수사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할 것.

8페이지입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은 함정 건조 및 항공기 도입 사업에서 기본 계획과 실제 도입 대수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시 재원 확보 가능성과 사업 여건 등 실현가능성을 반영할 것.

12번, 대형헬기 사업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은 대형헬기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조종 인력 공백 방지를 위한 운용계획을 수립할 것.

13번, 9페이지입니다.

해양경찰청 정보화 사업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은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정보화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며 유지보수비는 정보화 사업 예산으로 전환할 것.

10페이지, 마지막 부대의견입니다.

문금주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제시하셨는데 해양경찰청은 여수·광양항이 북극항로의 핵심 거점 중 한 곳으로 활용되어 치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여수 해양경찰서를 분서하여 고풍해양경찰서를 신설하는 계획을 보고한다. 이 건과 관련하여 전문위원은 그 보고의 대상으로 국회 소관 위원회 이렇게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말씀해 주신 13건 중에 다 수용을 하고 다만 3번 연가보상비 적정 수준 편성에 대해서는 시정·주의·제도개선을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4번 공공요금 및 제세의 연례적 이·전용 최소화에 대해서도 시정 유형을 제도 개선으로 통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10번 마약수사자문위원회 내실화 및 예산집행 관리 필요 사안에 대해서는 주의와 제도개선을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11번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준수 노력 필요 사항에 대해서 시정 유형을 부대의견으로 통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3번 인사 정보통신의…… 합리적인 전환 관련 건은 시정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병진 위원님.

○**이병진 위원** 육경하고 해경이 보면, 연가보상비 지급 한도도 보면 육경이 7~8일이고 해경은 0~4일입니다.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다음에 지급일수 또한 육경 같은 경우는 3.2~3.9, 해경은 0~1.8……

누가 이것을 만들어서, 상부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달한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이렇게 잡은 겁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저희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서 편성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병진 위원** 이게 합리적이지도 않고,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잡았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해경이 바다에서 더 힘들지 않아요, 육경보다?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긴급출동을 포함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득불 그렇게 했고 전년도에 위원회 도움으로 인건비를 700억 이상 더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편성한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래요. 제가 어제인가요 지적했듯이 주의 사항이 안 나오도록, 제도개선이 안 나오도록……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1만 3000명 우리 해경의 사기가 진작되고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청장님의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위원회에서도 저희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번 제도개선 수용, 2번 제도개선.

3번…… 이게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산 사항은 위법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전용을 할 때다 기재부에……

○**소위원장 윤준병** 이·전용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여서 위법 사항은 없다?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윤준병** 예, 알겠습니다. 제도개선.

4번, 이것도 예산 내용이어서 예산집행 절차상 위법 사항은 없다 이런 겁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공공요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제도개선.

5번 제도개선, 6번 제도개선, 7번 제도개선, 8번 제도개선, 9번 제도개선.

10번 제도개선…… 이것도 위법은 없다 이거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했다.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당초 첫해 행사에 생각보다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바람에 조금 했었고 금년도 행사부터는……

○**소위원장 윤준병** 이·전용 절차를 거쳐서 했다 이런 얘기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편성된 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제도개선.

11번, 부대의견을 하자는 거지요, 지금?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소위원장 윤준병** 부대의견 문안은 뭐예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문안은 끝부분에 ‘실현가능성을 반영한다’로 부대의견……

○**소위원장 윤준병** 실현가능성을 반영한다?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그렇게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송옥주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송옥주 위원** 예.

○**소위원장 윤준병** 11번은 부대의견 추가하시고요.

12번 제도개선.

13번, ISP 실시 안 하면 위법은 아닙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저희 ISP를 20억 원 이상은 다 실시를 하고 있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여러 가지 정보시스템 사업을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ISP가 의무화돼 있는 대상 사업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을 거쳐서 좀 내실 있게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줄 것 이런 내용이다 이런 거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전체 정보화 사업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소위원장 윤준병** 그래서 제도개선이다?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알겠습니다. 13번 제도개선.

그다음에 부대의견은 ‘신설하는 계획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그다음에 송옥주 위원님 부대의견 플러스해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항목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심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양경찰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시정요구

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의 자구 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강명구 문금주 문대림 서천호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정희용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황충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강형석

정책기획관 김정주

농촌정책국장 박성우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박정훈

농식품혁신정책관 김정욱

농업정책관 윤원습

식량정책관 변상문

유통소비정책관 홍인기

해양수산부

차관 김성범

정책기획관 권순욱

농촌진흥청

청장 이승돈

기획조정관 이상호

연구정책국장 김병석

농촌지원국장 권철희

기술협력국장 김황용

산림청

청장 김인호

기획조정관 이종수

산림산업정책국장 박은식

산림복지국장 송준호
산림보호국장 최영태
산림재난통제관 이용권
해양경찰청
청장 김용진
기획조정관직무대리 김시범
구조안전국장 박재화
수사국장 김인창
장비기술국장 이원재